

Ⅱ. 손해배상청구사례

원고가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사건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8. 3.자 판결 (94가합1437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5년 8월 3일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인 박 씨가 한국방송공사와 「사건 25시」 담당 프로듀서 조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방송부분이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방송보도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과 무언가의 연관을 갖고 있는 원고가 그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이 다른 언론매체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전파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법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법 제4조 제3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같은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시청각 효과가 동시에 수반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언론고유의 환경감시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적절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반면 그 제작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른바 기획프로그램이어서 속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사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오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다른 언론매체보다 사전에 방영,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의 확인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방송의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7월 12일 20:00시 KBS-1TV 「사건 25시」 프로그램에서 『조직 폭력! 텍사스의 황제』라는 제목으로 서울 미아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박 이 두목으로 있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의 범죄행각을 주제로 삼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상황재현하는 형식으로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의 중간부분에 제작중단과 방해의 한 사례로 신청인이 마치 수배자 박 의 동생으로서 촬영대본을 훔치고 제작진을 협박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가(94서울중재167) 취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14378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재호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2. 조

같은 번지 한국방송공사내 TV(티브이)제작1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김정은

변론종결 : 1995. 7. 20.

-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부터 1995. 8. 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19, 갑3 내지 5 각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이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1994. 9. 22.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와 피고 조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1. 12.경 서울신문사에 입사하여 1994. 3. 경부터 같은 신문사의 문화부에 근무하면서 방송분야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출입기자이고, 피고 공사는 국내외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1994.경 같은 피고가 방송하는 케이.비.에스(K.B.S)제1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사회비리 고발적인 성격의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인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왔고, 피고 조 은 피고 공사의 티브이(TV)제작1국에 근무하면서 1994. 당시 위 「사건 25시」의 제작을 담당한 연출자이다.

(2) 피고 조 은 1994. 6.초 경 제작팀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해 7. 2. 방송될 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의 주제(아이템)로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일대의 조직폭력배 사건을 다루기로 하여, 서울 성북경찰서 근무 당시 미아리 관내 조직폭력 수사를 처음

시작하여 1994. 봄 위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소외 박 을 직접 지명수배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 소속 소외 한 형사반장의 협조로 당시의 경찰수사서류를 토대로 사건의 검토 및 사전답사를 마친 후, 위 프로그램의 제목을 『조직폭력! 텍사스의 황제』로 하고, 그 주된 내용은 위 박 과 그가 두목으로 있는 쌍택이파라는 폭력조직의 범죄행각을 주제로 삼아 위 범죄조직의 활동을 상황재현 형식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촬영개시 전인 1994. 6.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차례에 걸쳐 수배자의 동생인 소외 박 가 이 사건 방송의 작가인 소외 정 에게 '왜 사건같지 않은 것을 다루려고 하느냐, 자기 형님이 성북일대에서 알아주는 건달이나 좋은 쪽으로 소문이나 있다, 실제로는 경찰수사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 자신을 만나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1994. 6. 16.경부터는 제작팀이 현지촬영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17. 사 전에 촬영약속이 되어 있었던 나이트클럽의 촬영이 위 나이트클럽측의 갑작스런 장소사용 거절로 예정되었던 촬영이 중단되는가 하면, 같은 달 18.경 위 한 형사반장까지 갑자기 소식이 끊겨 수사과정의 재연, 조직폭력 관련 피해자의 탐문수사, 피해자 및 관계주민과의 인터뷰가 모두 무산됨으로써 제작이 난항에 이르렀으며, 그러던 같은 달 21. 위 박 가 다시 위 정 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이 사건 방송의 촬영대본을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본내용에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위 서울신문사 소속의 피고 공사 출입기자로서 피고들이 제작 중인 이 사건 방송의 촬영대본 내용에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점이 많다는 제보를 위 박 의 동생인 위 박 로부터 입수한 후 그 사실확인 및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이를 기사화할 목적으로 취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박 가 대본을 입수했다고 위 정 에게 전화를 한 다음날인 1994. 6. 22.경 이 사건 방송 제작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담당연출자인 피고 조 을 만나려 하였으나 마침 같은 피고가 부재 중이자 이 사건 방송의 책임 연출자인 소외 문 을 만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촬영대본을 꺼내놓고 '촬영대본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관할권이 없는 지하철수사대 소속의 형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경찰의 감정수사가 아니냐'는 등으로 다소 지명수배자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거칠게 대본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문 및 그 주위에 있던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 등은 이 사건 방송의 대본은 경찰의 수사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제작진이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원고는 따지는 듯한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내어 원고는 더 이상의 취재를 중단하고 신문사로 돌아왔다.

(6) 다음날인 같은 달 23. 경 피고 조 ○은 그의 부재 중 원고가 방문하여 자신의 직장 상사인 위 문 ○ 등과 위와 같이 말다툼한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당시 방문목적과 촬영대본의 입수경위 등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단지 취재하러 갔을 뿐이고 대본 입수경위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상 이를 밝힐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듣게 되자, 위 피고는 원고와 수배자 박 ○의 이름이 비슷함을 들어 위 박 ○과의 관계 등을 따지며 원고의 방문사실을 제작중단압력사례의 하나로 제작일지의 형식으로 이 사건 방송에 삽입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방송국 출입기자로서의 신분이 무시당한 느낌에 원고는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어 서로의 감정이 격앙되는 바람에 통화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위 통화 직후 원고는 위 피고의 직장상사인 위 문 ○ 과 피고 공사의 홍보부에 각 항의전화를 걸어 위 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사람으로 제작일지에서 취급하려는 피고 조 ○의 언동에 대한 해명과 그 제작일지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7) 그 후 피고 조 ○은 담당 연출자로서 피고 공사를 통하여 1994. 7. 2.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제작 방해사례들을 폭로하기 위하여 중반부에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인 소외 이 ○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저희 취재진에게 각종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제작 방해 사건 사례들을 일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압력은 사건 25시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사를 낭독하게 한 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향과 함께 화면의 절반 정도는 정지화면으로 전화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화면상에 자막으로 ‘① 6. 13. 14:00경 박 ○의 동생 사건25로 1차 전화, ② 6. 14. 23:00경 작가의 집으로 2차 전화, ③ 6. 15. 13:40경 사건 25시 사무실로 찾아옴, ④ 6. 15. 21:00경 작가의 집으로 3차 전화, 24:00경 박 ○이 직접 작가의 집으로 전화, ⑤ 6. 17. ○○나이트클럽에서 예정된 촬영, 갑작스런 사용거절로 제작 중단, ⑥ 6. 21. 22:40경 박 ○의 동생, 작가의 집으로 4차 전화, 촬영대본을 입수했다고 밝힘’ 등의 제작방해압력 사례들을 소개하다가 뒤이어 원고의 위 방문사실을 ‘6. 22. 14:00경 S신문사 박 ○기자, 사건 25시 사무실로 찾아와 촬영대본 내용에 문제제기’라는 내용의 자막(이하 이 사건 방송부분이라 한다)으로 약 5초간 삽입하여 방영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방해 압력사례를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을 제작방해 사례의 하나로 다룸으로써 원고가 마치 폭력조직과 어떤 연관을 맺고 부당하게 이 사건 방송의 제작방해를 한 것처럼 방영하여 언론

에 종사하는 원고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익명으로 자막을 처리하여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국내의 신문사 중에 'S신문사'로 지칭되는 신문은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신문사밖에 없고, 서울신문사 내에 '박 ○ 기자'는 원고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있어서 'S신문사의 박 ○ 기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위 사정상 적어도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신문사의 시청자들은 물론 원고가 서울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생활 주변의 신문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방송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원고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문제된 단편적인 방송장면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가 보도에 접하는 통상의 태도를 전제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사용된 어휘나 영상의 일반적인 의미, 관련된 전후장면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부분이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방송보도는 쌍탁이파라는 폭력조직과 무언가의 연관을 갖고 있는 원고가 그 폭력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이 사건 방송의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작방해를 한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위법성조각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여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의 목적, 방영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영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당초 이 사건 방송대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명수배자인 위 박

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편파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소 통상적인 취재활동의 범위 내지 관행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취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은 살지언정 어디까지나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문제가 된 폭력조직을 위하여 부당하게 방송

제작 중단의 압력을 가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마치 부당하게 제작방해 압력을 가하려 하였다든 취지의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 조 ○○ 으로서는 일응 원고방문 이전의 일련의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방송 대본의 작가인 위 정 ○○ 이 수배자의 동생인 위 박 ○○ 로부터 모기자에게서 촬영대본을 입수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신문사의 기자라는 원고가 분실된 그 대본을 가지고 와 대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원고의 이름이 수배자인 박 ○○ 의 이름과 비슷한 점,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촬영대본의 입수경위 등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취재원 보호를 구실로 그 입수경위를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시로서는 원고의 방문과 대본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같은 피고가 제작하고 있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부당한 제작방해의 압력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일단 있었다고 보여지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7호증의 1(수사의뢰에 대한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 ○○

은 원고의 방문 이후 원고와의 확인전화에서 이 사건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강력한 부인에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 공사를 통하여 촬영대본의 도난사건에 대하여 중앙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1994. 6. 26.경 위 경찰서로부터 위 촬영대본은 피고들 제작팀이 같은 달 17.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 단란주점에서 촬영을 한 후 현장에 두고 간 대본 1부를 위 단란주점의 주인인 소외 양 ○○ 이 습득한 후 소외 최 ○○, 임 ○○ 을 거쳐 위 박 ○○ 에게 건네준 것이라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쯤 같은 피고는 이미 원고가 위 촬영대본을 피고들로부터 몰래 입수하여 위 박 ○○ 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되기 전까지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위 박 ○○ 등 폭력조직과의 연관관계 및 원고의 방문목적 등에 대하여 더 이상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이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래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이 다른 언론매체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전파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법은 방송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4조 제3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시청각효과가 동시에 수반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이른바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언론고유의 환경감시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반면 그 제작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른바 기획프로그램

이어서 속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오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다른 언론매체보다 사전에 방영,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의 확인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방송의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 ○은 원고와의 1회의 전화통화 이외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같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되기 전인 1994. 6. 26.경에는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고 적어도 원고의 대본입수경위에 대한 의심은 풀렸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그동안의 원고의 강경한 부인태도, 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 ○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조직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방송제작 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거나 이 사건 방송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것은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 공사는 피고 조 ○의 사용자로서 같은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기사보도를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적극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수반되는 취재행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수단,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편 방송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방송순서의 편성, 제작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같은 법 제3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재의 명목으로 방송의 주제(아이템)만이 확정된 후 아직 그 촬영, 제작단계에 있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취재관행상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촬영대본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방송편성에 부당한 간섭을 가하는 듯한 언동을 취하였고, 피고 조 ○으로부터 방문목적 및 제보입수경위를 밝히려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에 대하여 취재원보호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의심을 사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점, 또한 을 3호증의 1, 2, 을 3, 4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1995. 3. 30.자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후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94. 7. 16 방송된 이 사건 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인 사건 25시의 '사기당한 농심' 편의 중간부분과 끝부분에 이 사건 방송부분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여 각 28초와 24초간 2차례에 걸쳐 "지난주 사건 25시에서 방송된 조직폭력 텍사스 황제편 제작에서 S신문 박 ○기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자막방송된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문제의 박 ○과 박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회자의 멘트와 동시에 자막으로 "조직폭력! 텍사스의 황제" 편 사건일지 중 (S신문 박 ○기자, 문제제기)로 자막방송한 부분은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각 정정보도를 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경위, 그 후의 피고들의 정정방송의 경과 및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보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우리라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방송의 시청률, 이 사건 방송부분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고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4. 7. 2.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8.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

□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정 숙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약업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는 위 기사로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4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자 판결 (94가합50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2. 21.자 결정 (96타기537)
서울고등법원 1996. 2. 27.자 결정 (96카13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 한겨레신문사측에 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1면과 19면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한약업사 보복수사 의혹』이란 제목 아래 「김 씨가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약업사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구제를 조건으로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고, 그 후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치자금전달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자 김 씨가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정 씨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정 씨에 대해 원고의 압력으로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 돈이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도처럼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나아가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위 보도는 보복수사를 당하여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는 정 의 출감시의 인터뷰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위 사건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여 보았다거나 정 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행해진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고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사측에서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인 김 씨는 1심 담당재판부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1996년 2월 21일, 정정보도 이행을 촉구하고,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사는 원판결 중 정정보도 게재에 가집행을 명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제기, 1996년 2월 27일 「정정보도문 게재는 항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원고는 본 사건 소송을 취하였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5021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석진, 한이봉, 표재진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김기중, 정연순

변론종결 : 1995. 12. 29.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1996. 1. 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의 4분의 3 금액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상단부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의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원고는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소의 김영삼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7. 12. 15. 설립되어 그 이후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4. 27.자 위 한겨레신문의 1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큰 제목 아래 다시 『한약업사 정 씨 주장 대선 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 정책 반영 노력 편지 보내』, 『93년 1월엔 김영삼 당선자 편지도 받아』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일자 한겨레신문의 제19면에는 별지 제4목록과 같이 『한약업사 보복수사 의혹』이란 큰 제목 아래 『정 씨 민원 내자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협박』, 『이 씨 등 만난 뒤 수사착수』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기사를 게재하여, 이 신문을 전국의 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한약업사인 소의 정 씨 이 정치자금 명목의 금 1억여 원을 「김 씨」에게 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원고의 압력에 의하여」 위 정 씨에 대한 보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위 기사의 제목과 그 배치, 본문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는 결국 독자들에게, 원고가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위 정 씨으로부터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구제를 조건으로 한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고, 그 후 위 불합격자들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정치자금 전달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자 원고가 정 ○○○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위 정 ○○○에 대해 원고의 압력으로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가 전국의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에 따라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따른 사실의 인정과 판단

(1) 사실의 인정

갑 제4호증의 27 내지 31, 33 내지 37, 39, 40, 41, 44 내지 112, 114, 115, 117, 118, 119, 132, 133, 134, 135, 148 내지 177, 갑 제5호증의 3, 4, 13, 14, 17, 40의2, 50의2, 50의3, 52의2, 55의2, 55의3, 56의2, 72, 을 제1호증의 7, 11, 12, 13, 14, 15, 16, 94 내지 99, 110, 112, 122, 128, 을 제2호증의 4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13, 179, 을 제2호증의 16내지 19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지 ○○○, 채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합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볼 증거없다.

(가)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서 전국적으로 2,100여 명이 응시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1,395명 가운데서 한약업사가 없는 각 면에 1명씩 합격시킨다는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528명이 합격하였고, 나머지 867명이 불합격처분되었다.

(나) 위와 같이 60점 이상을 얻고도 불합격한 자들은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하여 자격을 얻고자 노력하던 중 불합격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지 ○○○가 1989. 6. 21. 한약업사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불합격자들의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한 단체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89. 4.경 전국적으로 107명 가량이 대전유성관광호텔에 모여 83 전국 한약업사자격취득 구제위원회(이하 83회라 줄인다)를 결성하여 회장과 각 지역을 맡을 지역장을 선출하는 한편, 위 모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지면이 넓다고 인정되는 또 앞에서 본 한약업사 시험의 실시를 위해 노력한 한약업사시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소외 정 ○○○(정 ○○○은 위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불합격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위 정 ○○○에 대해서 위 83회 회원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구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히 사례할 계획이었다)과 위 지 ○○○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위 정 ○○○으로 하여금 행정부나 국회쪽에, 위 지 ○○○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 쪽에 위 모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위 모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 모임 당시 참석회원들로부터 각 금 50,000원 씩 합계금 3,450,000원(50,000×107명)을 모금하고, 다시 같

은 해 9.경 부담금으로 각자 금 300,000원 씩 합계금 32,700,000원(300,000×109명)을 모금하여 그 돈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소원을 위해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대학의 교수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학술논문 등을 써서 발표하게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1990. 봄 무렵 위 83회에서 특별모금을 반대하던 대구회원 23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 별도모임을 만들고 나머지 회원 84명 정도가 다시 대전유성관광호텔에 모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회원당 금 3,000,000원 씩 위 지 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여 위 지 가 약 금 250,000,000원 가량을 모금하였다.

(라) 한편 위 지 는 1989년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이 원고가 되어 한약업사자격 인증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위 83회 회원 대부분이 위 83회 결성 이후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음)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던 1991. 10. 23. 소외 변호사를 선임(착수금 일천만원, 성공보수 구천만원으로 하되, 성공보수 역시 착수금과 같이 지급하며 다만 패소의 경우는 위 성공보수는 되돌려 받는 조건)하였으나, 위 소송이 1992. 9. 2. 패소로 끝나고 반환약정된 위 성공보수 명목의 금 90,000,000원은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되었다. 위 지 는 위 소송 중인 1990. 6. 8. 위 83회 회원들의 보조참가 하에 약사법 제37조 제2항 한약업사 개업지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1. 9. 16. 위 위헌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 무렵 위 지 는 같이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후배인 소외 김 과 그 친구인 소외 조 의 소개로 변호사인 소외 이 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이 과 상담을 통하여 입법청원을 통한 법령의 개정 및 행정조치의 방법으로 한약업사 자격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를 선임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1992. 10. 14. 위 이 과 착수금 일억이천만원(1992. 10. 14.에 현금 4,500만원, 1992. 12. 14.에 어음 7,5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 성공보수 이억원으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지 는 착수금 중 계약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 45,000,000원 중 금 15,000,000원만을 당일 국민은행 위 이 계좌(079-)에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 105,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이 의 양해를 얻어 1992. 11. 12. 대전 직할시 농협중앙회 유성지점 약속어음 지급기일 1992. 12. 12.로 액면 금 2,000만원권 4매(어음번호 자가 01558311, 자가01558312, 자가01558314, 자가01558315)와 액면금 2,500만원권 1매(어음번호 자가01558313)를 발행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지급기일 무렵인 1992. 12. 9. 위 변호사로부터 돌려 받기로 하였던 변호사 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부족이 생겨 위 이 과 협의하여 위 약속어음 5매를 모두 회수하고 대

신 같은 농협중앙회의 지급기일 1993. 1. 8.로 된 액면금 3,0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 01558317), 5,0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01558319), 2,500만원권(어음번호 자가 01558320)을 발행교부하여 주었는데, 만기일 전인 1992. 12. 7. 위 이 이 위 2,500만원권과 5,000만원권 2장을 그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조흥은행 을지로지점에 예금하여 만기일에 어음교환으로 정상 결제되었으며 위 이 은 당일 위 금 75,000,000원을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원권은 위 지 가 이 에게 만기에 제시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위 이 이 이를 받아들여 제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지 가 1992. 1. 20. 전 현금 30,000,000원을 위 이 에게 지급하고 위 어음을 반환받아 자신이 1992. 1. 20.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음으로 현금화하였다.

(사) 위 지 는 1990. 2. 3. 3당 합당 전까지 신민주공화당의 간부로 있다가 합당시부터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 을 선임한 후 위 이 이 1992. 12.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시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인 김영삼의 선거운동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이 에게 83 한약업사자격취득 국제위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김영삼 후보를 만나서 그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 위 이 은 위 김영삼 후보의 아들인 원고 김 의 중학교 3년 선배로서 그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고 대학 다닐 때까지 서로 교류하여 온 다정한 사이로, 1985년에 시행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1989년 경부터는 위 김영삼 후보의 정치적 일들도 거들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왔다.

(자) 위와 같이 위 지 의 부탁을 받은 이 은 1992. 11. 26. 서울 팔레스호텔 소회의실로 지 를 비롯한 위 83회 회원 70여 명을 데리고 가 원고를 만나게 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온 것이나 우리 아버지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니 우리 아버지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면 당선 후에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

(차) 위 지 는 1992. 1.경부터 1980년 초에 결성된 전국 그린벨트해제추진위원회(이하 그린벨트해추위라 줄인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 을 통하여 원고를 만난 후 이 이 에게 위 그린벨트해추위는 회원이 28만세대에 유권자만 60만명이나 되고 푹푹물쳐 있으니 그린벨트해제공약만 해주면 그린벨트해추위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여, 1992. 12.초 위 이 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원고를 만나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그린벨트해추위 대표자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1992. 12. 12. 그린벨트해추위 대표 30여명과 함께 여의도 한서빌딩 내에 있는 원고 사무실로 가 원고를 만났다.

(카) 위와 같이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해추위 대표들이 그린벨트해제건을 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대표들이 말로만은 안되고 각서로 보장하라고 하므로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일단 헤어진 후, 원고는 1992. 12. 14. 위 지에게 별지 제5목록과 같이 작성된 서면을 모사전송기를 통해 보내 주었고, 위 지는 이를 그린벨트해추위 대전지회장인 소외 황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황은 이를 그린벨트해추위 전국 회장인 소외 김에게 전달하여 위 김이 그 사본을 전국의 그린벨트해추위 지회장들에게 송부하였다.

(타) 위 83회 회원들은 그들이 지지하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더구나 자기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임하였던 위 이이 1993. 3. 3.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취임하자 한약업사자격취득의 기대가 커졌으나, 그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고 더구나 위 이이 같은 해 8.경 위 사정비서관 자리에서마저 물러나자 위 지에게 자기들의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파) 1994. 1.초 대전시 유성에 있는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렸던 위 83회 회원 총회에서 회원들이 위 지에게 회비를 1인당 300만원 씩이나 거둬 가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거칠게 항의하자(위 83회 회원 중 소외 정은 1994. 1. 6. 위 지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됨) 위 지는 자기가 사실은 위 이이를 통하여 1억2,000만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니 금방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무마하는 한편, 전에 위 이이에게 변호사 수입료로 지급한 어음의 부전지들을 아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어음부전지들의 적요란에 원고 이름을 써넣은 후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나는 위 83회 회원들에게 제시하였다.

(하) 한편 위 정은 1990년 봄 대구지역회원들과 함께 위 83회 전국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꾸준히 대통령, 국무총리, 보사부장관, 민정당, 감사원 등에 호소문과 건의서 탄원서 등을 보내 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특히 1992. 10. 1.과 같은 해 12. 8.에는 민주자유당 민원조사부장 하에게 부탁하여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명의로 각 보사부장관과 감사원에 한약업사자격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촉구하는 공문까지 기안하여 보내게 함), 1994. 2. 1. 지를 만나 그 간의 서로의 활동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위 지의 활동상황도 정이 알고 있는 청와대 모사전송기 번호로 전송하기로 하고 헤어져 그날 위 지로부터 원고가 1992. 12. 14. 위 지를 통하여 위 그린벨트해추위에 보낸 위 서면과 위 어음부전지를 역시 모사전송기를 통해 건네받았다.

(거) 이를 받은 정은 1994. 2. 2. 「전국한약업사 시험추진 위원회 위원장 정」의 명의로 『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지불건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지가 이이를 통

해 1992. 11. 12. 원고의 개인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를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억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원고가 관련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고는 물론 대통령에게까지 중대한 물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위 문건 뒤에 위 어음부전지와 원고가 그린벨트해추 위에 보낸 위 서면(이건 서면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 1992. 12. 14.」이라고만 되어 있어 위 서면을 위 부전지 및 위 문건내용과 같이 보면 마치 원고가 위 83회 회원들에게 보낸 것처럼 보인다)을 첨부하여 역시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였다.

(너) 위 문건이 같은 해 2. 3. 위 이에게 전달되어 같은 해 2. 4 위 이 자를 통하여 정 을 롯데호텔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그 자리에는 원고나 원고의 누나는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 김 , 조 이 동석하였다) 위 문건에 담긴 내용의 취하를 종용 하였으나 정 이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2. 14. 「한약업사자격시험합격대상자 구제촉구에 관한 탄원서」를, 다시 2. 28. 「대민공약전에 관한 민원해결 건의서」를 연이어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 모사전송기로 보내었다.

(더) 1994. 2. 25.경 수사기관에서 정 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결국 정 은 1994. 3. 2. 위 83회로부터 금 4,000,000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사실 및 1989. 12.부터 1990. 7.까지의 사이에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사실로 구속되었다

(러) 그 이후인 1994. 4. 26. 위 정 은 서울지방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되던 날인 위 1994. 4. 26. 14:00경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기자 소외 채 과 만나 위 채 의 질문에 피고의 위 보도내용과 같은 답변을, 다시 같은 날 22:30경 출소하기 직전 각 언론사 기자들(피고측에서는 소외 이 , 유 이 취재함)과 인터뷰하면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다만 위 채 과의 인터뷰 때와는 달리 1994. 2. 4. 롯데호텔에서 원고를 만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피고 소속 소외 성 은 데스크로부터 취재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로부터 보내오는 기사와 청와대 확인사항 등을 조합, 정리해 1면 머릿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기자와 연락하여 취재내용을 반복 확인하면서 기사를 작성, 피고는 이를 위와 같이 같은 달 27. 자 피고의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였다.

(2) 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지 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금 1억여 원을 받았고 이 정치자금을 받은 후 한약업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들의 구제를 위한 자필서신을 보냈었으며 이를 문제삼고 나오는 소외 정 을 만나 그에게 위

문제 등을 더이상 문제삼지 말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1994. 2. 4. 롯데호텔에 갔고 이를 거절하는 정에 대하여 보복수사를 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위 보도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 과 원고가 친근한 사이로, 위 이 이 위 지 와 사건수임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받을 무렵 위 지 와 위 83회 회원들을 원고에게 인사시킴으로써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구제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의 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도 그 돈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원고에게 위 돈이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보도처럼 원고가 위 지 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8, 을제5호증, 을 제7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한겨레신문의 취재기자들이 최선의 취재를 통하여 얻어 낸 내용을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고 신속한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행위자가 언론기관인 경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사실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위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보도는 원고에 의하여 보복수사를 당하여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는 위 정

의 출감시의 인터뷰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나 피고 소속기자들이 위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서 위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지 , 이 , 원고 및 정 을 수사한 수사기관 등에 위 정 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거나 위 정 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고 볼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기사가 게재된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이 전국에 배포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입장 및 피고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신문발행부수, 위 기사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경위,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광고의 게재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위 기사로 인해 원고가 명예훼손을 당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위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졌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는 1994. 4. 27.자 한겨레신문에 위 기사를 게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4. 4. 27.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6.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 졌다』라는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6. 1. 26.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응
판사 고 재 민

〈제 1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지난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 상단부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대선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보내』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 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입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또... 2월 4일 아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해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아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금 1천5백만원과 약속어음 5장 총액면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지 씨가 위 이 변호사를 선임한 데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위 돈과 약속어음이 건네지는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정 씨에게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도 없고, 또 김 씨와 김 씨의 누나는 1994. 2. 4.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정 을 만난 적이 없고, 정 씨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994. 4. 27.자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 2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대선직전 김씨사무실에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92년 대선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입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1992. 10. 14.경 온라인 송금으로 무허가 한약업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법적대리권에 관한 변호사 착수금으로 금 1천5백만원을 전달하고, 1992. 11. 12.경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으로 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면에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정 씨에게는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에 관하여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면에 「정씨는 또...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라는 기사와 같은 일자의 한겨레신문 제19면에 『한약업사 보고수사 의혹』, 『정 씨 민원내자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협박』, 『이 씨 등 만난 뒤 수사착수』라는 제목 하에 「지난 2월 4일 이씨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났을 때에도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약방도 문을 닫도록 하겠다' 고 협박했다」, 「이씨를 만난 이후 경찰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천안 해동한

약방 전화를 도청하고 집안 동정을 감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1994. 2. 4. 이 변호사가 정 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김 씨나 김 씨의 누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정 에게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 에 대한 경찰수사와 김 씨 및 이 변호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기사들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 3목록〉 한겨레신문 1994. 4. 27.자 기사

제 목 :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내 용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정씨는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 1억5백만원)과 수표·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이 돈은 변호사 수입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또 93년 1월 19일에는 김영삼 당선자 명의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1년 4개월이 지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 2월2일 청와대에 김 씨에게 돈을 주었는데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 지급 요약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자 이를 뒤인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기 전에 만난 한 언론인에게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변호사가 받은 1억5백만원짜리 어음과 관련해 「어음책 부표에 이 (김)이라고 쓴 것이 있어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 씨의 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어음책 부표는 정 씨의 수사기록에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4목록〉

경찰이 한약업사 대선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 내역을 청와대 등에 보내 민원 해결 압력을 넣은 정 씨의 입을 막기 위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씨는 2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대선 직전 제공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자 이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신변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며 「지난 2월 4일 이씨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났을 때에도 계속 떠벌리면 죽는다. ‘약방도 문을 닫도록 하겠다’ 고 협박했다고」고 주장했다.

◇ 수사착수 배경 = 경찰청 수사2과는 정씨에 대한 수사배경에 대해 「정씨가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민자당 사무총장 명의의 공금이 우리 정보망에 포착돼 내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착수 시기가 정씨가 이 씨 등을 만나 경고를 받은 직후이고 경찰청 수사2과 주로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막음용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수사과정 = 정씨는 이씨를 만난 이후 경찰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천안 한약방 전화를 도청하고 집안 동정을 감시했다며 「경찰이 나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엮기 위해 천안 어느 파출소장을 보내 진료를 받게 한 뒤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이 개발한 특효약 광고를 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돼 정씨의 한약방을 뒤져 관련 장부를 찾아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와는 달리 한약업사 자격증도 없이 무면허 진료를 한 지 씨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많은 다른 한약업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 검찰 기소 = 경찰에서는 원래 정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동형사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정씨가 구제위원회로부터 4백만원의 돈을 받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 위원회 일을 해준 것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부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정씨가 이 위원회 고문으로 일한 것을 자신의 사무가 아닌 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서로의 법률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검찰의 달랐던 부분은 정씨가 받은 4백만원의 성격」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정씨가 받은 4백만원 일부가 민원서류 작성 등에 부인 사실이 밝혀지고 또 그 액수가 별로 많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 사건에 대한 보안과 수사기록 은폐 =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이 사건 수사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특히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가산점을 받게 돼 구속 때 언론에 발표한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숨긴 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또 검찰은 정씨를 기소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해당 재판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대출 형식으로 자주 가져가 정씨의 변호인이 지난 20일 첫 공판 때까지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또 정씨가 「1억2천만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했던 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자금이라는 진술은 경찰 수사기록에 있으나 씨 관련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현철 씨 관련 부분도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決定文

사 건 : 96타기537 간접강제

신 청 인 : 김

서울 종로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석진, 한이봉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유현석, 김창국, 이석태, 조용환, 김형태,

김기중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제1면의 중앙 상단부에 별지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제1면에 게재된 『김 씨 쪽에 1억여 원을 줬다』라는 제목과 같

은 크기로, 본문내용은 위 1994. 4. 27.자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8,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신청인의 이 법원 94가합5021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1.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응
판사 고 재 민

〈목록〉

제 목 : 김 정치자금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지난 1994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제1면 상단부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 『대선 직전 김씨 사무실서 전달』, 『김씨 '민원정책반영노력' 편지 보내』라는 제목 아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한약업사 정 씨는 26일 지난 92년 대선 직전 무자격 한약업사들이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 씨 쪽에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92년 대선 직 전인 12월 12일 유성농협 발행어음 5장(총액1억5백만원)과 수표·현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던 김 씨 사무실로 한약업사 구제위원회 고 문인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자리에는 김 씨도 있었다는 말을 지씨한테 전해들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입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 「돈을 전해준 뒤 김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귀하의 민 원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또 2월 4일 이 씨로부터 연락이 와 롯데월드 커피숍에서 이 씨를 포함해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문제에서 빼달라. 계속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협박했으며 그 뒤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씨와 지 씨, 김 씨, 김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

지 말라. 자제하라' 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지 씨가 이 변호사에게 금 1천5백만원과 약속어음 5장 총액면금 1억5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지 씨가 위 이 변호사를 선임한데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위 돈과 약속어음이 건네지는 자리에 김 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무허가 한약업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정 씨에게 김 씨 자필서신이 전달된 사실도 없고, 또 김 씨와 김 씨의 누나는 1994. 2. 4.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정 을 만난 적이 없고, 정 씨에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994. 4. 27.자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決定文

사 건 : 96카135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대표이사 권근술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유현석,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김

서울 종로구

주 문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 선고 94가합5021호 손해 배상(기)청구사건의 판결 중 주문 제2항 정정보도문 게재에 가집행을 명한 부분의 강제 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96나7214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7.

□

재판장 판사 김 상 기

판사 강 신 섭

판사 이 홍 철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실명으로 공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6. 2. 27.자 판결 (95나24946)

서울지방법원 1995. 5. 19.자 판결 (93가합54908)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7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 달라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유 씨 등이 국가와 이 사실을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쌍방향소심에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항소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고, 1심에서 패소한 국가, 중앙일보, 경향신문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측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관련 7개 언론사로부터 모두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각 단계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정도를 높이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건의 경우 보도는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단계로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

상의 처벌을 가하는데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한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익명 보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범죄내용 자체가 청부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 이를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였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보유하며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회윤리에 비추어 심각한 비판을 면치 못할 사안임을 인정, 그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도 보도혐의 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며, 이 건의 경우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경찰의 공식발표를 취재보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경찰의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분명한 담당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에게 취재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의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며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의 기자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행함이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및 보도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각 기사내용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하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문제된 피의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지 통권 56호 156면 참조).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2494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1. 유

서울 은평구

망 정 의 소송수계인

2. 조

3. 정

4. 정

5. 정

원고 2-5 주소 서울 서초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홍승기

피고, 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신 , 함

피고, 피항소인 :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항소인 :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필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인형무, 오두환

피고, 항소인 : 4.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안신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 피항소인 :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항소인 :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정원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 7.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김정은

변론종결 : 1996. 1. 16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5. 19. 선고 93가합54098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1,111,111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6. 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각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

고 유에게 각 금 30,000,000원, 원고 조에게 각 금 166,667원, 원고 정, 정, 정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1)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1,666,667원, 원고 정, 정, 정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 1.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 1, 2, 3호증, 강제4호증의 1, 2, 3, 강제5호증의 1 내지 6, 강제6, 7호증, 강제8호증의 1 내지 21, 강제9호증의 1 내지 36, 강제 10, 11호증, 강제12호증의 1 내지 5, 강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 2, 3호증의 각 1, 2, 을제 4 내지 8호증, 을제 9호증의 1, 2, 을제 10호증, 을제 11호증의 1, 2, 을제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홍, 허, 당심증인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유는 1975. 7. 23. 소외 이 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년 무렵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이 과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었으며, 망 정은 위 원고 유의 오빠인 소외 유의 친구였다.

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0. 5. 24.경 소외 윤 으로부터 「유 등에게 집단으로 감금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해 5. 29.자로 「피고소인 유는 내연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및 수명의 폭력배와 함께 남편 이 을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청부살해하여 남편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또는 그를 공갈 협박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90. 5. 18. 23:00경 남편의 친구인 고소인 윤 을 서울 서초구 소재 석주호텔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그를 다시 강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대화카페 지하실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같은 날

23:30경부터 이튿날 05:00경까지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6. 27.경에는 위 이 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보고 원고 유 등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위 윤 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하였던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에게 배당되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소인인 원고 유 에 대한 피의 사실조사 및 공범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 및 검거활동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담당경찰의 원고 유 등에 대한 구속수사 건의가 검찰의 보강수사지시와 함께 거부되고 원고 유 로부터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항의 까지 받게 되자, 그 이후의 수사는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 소속 경사 광 , 경장 공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인 윤 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적한 현장에 원고 유 외에 망 정 과 소외 김 이 같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그들이 한결같이 그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같은 해 8. 1.경 피의자들 중 원고 유 , 망 정 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 같은 해 8. 1. 14:00경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는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찰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강남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였으니 취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접한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이 서초경찰서에 취재를 위해 모이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원고 유 등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및 피의자 검거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취재편의를 위해 관련 수사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토록 하였으며, 또 같은 해 8. 2. 오전 중 뒤늦게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속기자 홍 및 같은 해 8. 10. 역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속 주간경향 기자 이 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취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에게 원고 유 및 망 정 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

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같은 해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 관련기사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도하였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같은 해 8. 2. 19:00경 정규 뉴스시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의자 유 가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부폭력배 정 등에게 남편을 혼내주고 위자료조로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편의 친구인 피해자 윤 을 불러내어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감금 폭행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를 약 30초 내지 1분간에 걸쳐 원고 유 등의 얼굴모습과 함께 방영하였고, 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같은 해 8. 19.자 주간경향 31, 32면에 원고 유 등에 대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과장되고 선정적으로 표현된 범죄경위 등을 추가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 원고 유 , 망 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 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 3. 발부되었고, 같은 해 8. 29. 위 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1991. 12. 19. 위 법원에서 「고소인 윤 의 진술은 상호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1992년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윤 은 그 후 1993. 6. 25.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중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0. 30.경 다시 원고 유 등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 유 와 그 남편 이 간의 이혼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으며(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형법 제126조)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예하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경찰관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유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이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은 대중매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소속기자들은 위 원고 유 및 망 정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혐의사실을 취재·보도함으로써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하여 피고들은 범죄내용 자체가 청부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극히 반인륜적인 범죄였으므로 이를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나아가 원고 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보도가 사후에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기자들은 경찰의 공식발표를 취재보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평범한 시민이었고 원고 유 는 소외인과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을 뿐 하등 공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공적인 활동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들은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후에 무죄로 판명된 원고 등의 혐의사실을 보도하였으며, 그 보도에 있어서 원고 등의 실명을 써서 보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로 범죄행위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가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범죄 또는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1) 범죄보도의 의의

범죄는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는 비정상적인 특수상황과 그 속에서 감행된 일탈적 행위가 제시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충족하는 동시에 범죄행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그 외에도 범죄의 경과와 그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보도는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언론

이 행하는 공적 과업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과 그 수사경과에 관하여 알려는 대중의 강한 관심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관심의 대상이 실질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아 범죄와 그에 대한 추궁은 공공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범죄 또는 범죄혐의보도의 개인에 대한 영향

이렇게 범죄에 대한 공공의 정보의 이익이 크다 할 지라도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사건보도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정착된 기본적인 가치를 공격함으로써 사회의 법적인 질서를 교란하거나 법공동체를 이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러한 범죄의 유무와 그 관계자를 밝혀내고 법원에 죄를 청구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 사법권이 독립된 법치국가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벌 때문에 주위로부터 멸시당하거나 배척받게 되며, 그 차별의 범위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에 의존한다. 동료간에서 그의 명예는 손상되고 그의 일반적 가치평가는 실추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공적 과업 중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보도의 결과 범죄자에게 위와 같은 명예 손상과 차별대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사회에서 사회의 공동가치를 침범한 범인에 대한 일반의 반응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은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처벌을 가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범인이라는 추정 내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관계자의 명예는 손상된다. 단순한 혐의는 오류의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사결과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엄두에 두지 않는 일반독자는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연루됨에 대한 인식은 강한 집착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는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3) 실명보도의 폐해와 익명보도의 원칙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적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 전에 수용자의 대부분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보도대상이 된 자가 미지의 인물인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일률적·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그 묘사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생각에 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익명보도주의).

(4) 범인의 인물에 대한 공개의 정당한 이익-익명보도주의의 예외

익명보도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원명시의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이 공적인물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배경 또는 비법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그 신원에 대한 정당한 공적인 이익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과 비범함을 상회하여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공적 지위나 공적 생활에 등장한 바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바, 이러한 원고 등에 대한 혐의사실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관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신원확인보도는 공적인물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소속기자들이 취재한 범죄내용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 유 가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폭력배를 시켜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던 바, 그 내용을 보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악성을 보유하고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회윤리에 비추어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할 사안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일응 그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위 보도혐의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취재 보도된 것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수사 및 재판의 진행과 보도

범죄의 보도는 범죄의 혐의가 구체화되고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법적으로도 달리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관계자의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는 현실화되고,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입건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수사 결과 중한 범죄의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면 피의자가 구속되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상소가 있으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에 이르게 된다. 각 단계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율도 달라지게 되는데, 형법에 의하면 공판청구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표는 금지되고(형법 제 126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7조)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며, 그것이 직접 언론을 수명자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은 그 취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각 단계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의 정도를 높이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에 대한 피고들의 보도는 원고 등에 대한 소외인들의 고소가 있는 후 2개월 간의 수사를 거친 후에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이러한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그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실명을 써서 보도하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그와는 무관한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도 내용에는 원고 유가 춤바람이 났다든가 카바레에서 만난 폭력배를 청부폭력을 위해 고용했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을 표현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선정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인격상이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변

피고들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가사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이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후에 원고 유 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반면 고소인 윤 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됨으로써 허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허위보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그 보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않는 수사단계에서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 등의 혐의내용을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명예훼손의 손해를 끼친 피고들의 행위는 이익형량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피고들의 항변을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과연 경찰의 공식발표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의 형법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기관이 그 관할 처리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그 사건의 국민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하여 국민대다수의 간절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청 때문에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율은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는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명한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공식발표라 할 수는 없다(또 피고들은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수사경찰관 등 신뢰할 만한 수사담당자로부터 취재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소사건의 수사가 종종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보면 또 수사담당자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기자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행함이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및 보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유 , 망 정 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유 , 망 정 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의 정도 및 무죄판결 확정 후의 명예회복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5,000,000원, 망 정 에게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망 정 에게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망 정 에게 금 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 망 정 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정 이 1994. 10. 20. 사망한 사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조 , 자녀들인 원고 정 , 정 , 정 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조 , 자녀들인 원고 정 , 정 , 정 이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정성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3,333,333원(1,000,000원×3/9, 이하 원미만 버림),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2,222,222원씩 (10,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666,666원(5,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1,111,111원씩(5,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 원고 조 에게 금 2,333,333원(7,000,000원×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금 1,555,555원씩(7,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3,000,000×3/9),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3,00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

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는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다만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27.

재판장 판사 박 용 상
판사 박 태 동
판사 황 정 규

각 피고들 별 보도기사

1. 1990. 8. 2.자 동아일보
이혼訴 제기당한 간통 女人
남편 請負 폭행
위자료 받아 내려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달라며 청부폭력을 한 俞 (39·서울 恩平구)와 俞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鄭 씨(43·상업) 등 청부폭력배 2명에 대해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俞씨는 지난 88년 남편 李모 씨(41·회사원)로부터 자신이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억원을 받아내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1990. 8. 2.자 중앙일보

춤바람 主婦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 請負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을 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들에게 청부, 남편의 친구를 납치, 폭행한 俞 씨(39·여·서울)와 俞씨의 청부로 폭력을 휘두른 씨(43·의류판매상·폭행치상 등 전과5범·서울)를 비롯한 폭력배 2명 등 모두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폭력배 씨(32·노점상·서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李明 씨(41·회사원·전북 전주시)가 88년 9월 춤바람이 난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 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카바레 등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다.

3. 1990. 8. 2.자 조선일보

離婚소송 30代 남편 친구 請負폭행

폭력배 등 3명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폭력배들을 시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내려한 俞 씨(39·주부·서울 은평구)와 俞씨의 부탁을 받고 俞씨의 남편의 친구를 폭행한 鄭 (43·의류판매상·서울 서초구), 丁 씨(34·의류판매상·서울 동작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李明 씨(41·회사원·전북 전주시)가 지난 88년 9월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俞씨는 그러나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지난 5월 18일 밤 11시 40분쯤 鄭씨 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尹모 씨(44·운수업)를 모 호텔로 불러내 李씨의 행방을 대라며尹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1990. 8. 2.자 경향신문

離婚소송 主婦가 청부폭력

남편친구 감금... 폭력배 등 3명 수狀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달라며 청부폭력을 부탁한 俞 씨(39·서울 은평구)와 鄭 (43·상업·서울 서초구)등 청부폭력배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

고 달아난 金 (32·상업)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회사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카바레에서 만나 알게 된 鄭씨에게 「남편에게서 위자료 5억만 받아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이다. 또 鄭씨 등은 지난 5월 18일 하오 11시 40분쯤 남편 李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李씨의 친구인 尹모 씨(44·운수업·서울 송파구)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준비한 승용차로 서초구 반포동 ㄷ카페로 납치해 옷을 벗기고 흥기로 위협, 李씨의 행방을 덜 것을 요구하며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俞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와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오다 남편 李씨에게 발각,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5. 1990. 8. 2.자 한국일보

위자료 5億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청부폭행을 의뢰한 俞 씨(39·주부·서울 은평구)와 俞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鄭 씨(43·의류판매상·서울 서초구)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金 씨(32·상업·서울 송파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俞씨는 남편 李모 씨(41·회사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 소송이 계류 중인데,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평소 카바레에서 알게 된 鄭씨 등에게 「남편을 납치폭행,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했다는 것.

6. 1990. 8. 19.자 주간경향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

수없는 불륜을 드러내자 해결사와 짜고 남편재산 노려

남성편력 소문 나

방탕한 결혼생활로 남편에게 외면당한 한 간통녀가 오히려 남편을 청부 폭행,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쇠고랑을 찼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유 씨(가명·39·주부·서울시 은평구)와 정 씨(가명·43·상업·서울 서초구)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김모 씨(32·상업) 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18일 남편 이 씨(가명·전북)의 친구인 윤모 씨를 서울 역삼동 소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이씨의 행방을 말하라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것. 윤씨는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

내들에 둘러싸여 계속 협박조의 추궁을 당했으나 끝까지 친구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유 씨는 사내들에게 「다른 곳으로 끌고가 혼을 내주자」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반포동의 ㄷ카페로 윤씨를 데려가 감금하다시피하여 폭행과 욕설을 자행했는데, 유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우기 시작해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몇 남성들과 춤을 추다 급기야 남편 이 씨에 의해 간통혐의로 피소, 아직 전주지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며 남편 이 씨는 대치동 O 아파트에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송파동에서 패션구두 대리점을 하는 등 꽤 부유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동산 등 이 씨의 재산은 대략 30억 정도에 이른다고, 별거 중에도 이씨는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종종 유씨의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 유씨의 행동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한 것이었다고. 남편 이 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첫 간통으로 고소된 뒤에도 유씨는 청주에서 한 남자와 살다 2차 피소, 전남 광주의 모대학 교수와도 3차 간통피소를 당하는 등 유씨의 남성편력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 이씨도 아예 포기, 부부의 관계에서 원수사이로 변해버렸다. 사실 이전에도 유씨는 친정 오빠 등과 함께 이씨의 사무실과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다는 것. 심지어 이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까지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한다. 전주지법에 계류 중인 간통사건이 확정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씨는 위자료 한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유씨는 일당과 작당, 남편 이씨를 살해하거나 위협해서 위자료로 5억원을 받아내고자 한 것. 만약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씨의 전 재산이 법적으로 아직 부부상태에 있는 유씨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줄지에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의 조건은 살해시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가담자들에게 주고, 위협해 위자료로 5억원을 받아내면 그 중 1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남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를 자동차로 들어받아 죽이고 과실치사로 위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지난 5월 18일 죄없는 이씨의 친구 윤모 씨는 레스토랑과 카페에 끌려 다니면서 온갖 폭력을 당했다. 나무젓가락에 얼굴을 찔리고 콜라병으로 중요부위를 구타당하는 등 전치 5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윤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팬티만 남긴 채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씨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가위로 헛바닥과 성기를 잘라 버린다고 위협했다 한다. 결국 5시간 30여분 동안의 감금에서 풀려난 윤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이들을 폭력 및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기도. 2년여의 불륜행각 끝에 드디어 남편에 의해 쇠고랑을 찬 유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노래, 가야금, 탈춤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기의 소유자라고 한다.(이

기자)

1심 判決文

사 건 : 93가합54908 손해배상(기)

원 고 : 1. 유

서울 은평구

망 정 의 소송수계인

2. 조

3. 정

4. 정

5. 정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홍승기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신배식, 함용호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봉진, 차형근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필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4.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종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최승민
7.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8.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5. 4. 21.

- 주 문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666,666원씩,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각 금 444,444원씩 및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 에게 금 666,666원, 원고 정 , 정 , 정 에게 금 444,444원씩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5. 5.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각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유에게 각 금 30,000,000원, 원고 조에게 각 금 166,667원, 원고 정, 정, 정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이에게 대한 1990. 8.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6호증, 강제8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36,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홍, 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 광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유는 1975. 7. 23. 소외 이 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경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소외인과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망 정은 위 원고 유의 오빠인 소외 유의 친구인 자이다.

나. 1990. 5. 24.경 위 이의 친구인 소외 윤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원고 유, 망 정, 소외 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위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후 1990. 5. 29.자로 「피고소인 유가 위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위 이 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망 정 등과 함께 위 이 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1990. 5. 18. 23:00경 위 이의 친구인 윤 을 납치한 후 이 이 의 소재를 대라며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까지 감금, 폭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990. 6. 27. 위 이은 서초경찰서에 「① 피고소인 유가 1990. 3. 11.경 위 이의 집안에 침입하여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② 이혼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폭력배를 고용하여 이혼이 끝나기 전 위 이 을 살해하면 상속 재산의 1/2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자료로 금 5억원을 받으면 1억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맡기고, ③ 피고소인 유는 폭력배를 시켜 위 이의 아파트 및 양화점 매장을 감시하고 1990. 5. 17.부터 20.까지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④ 피고소인 유의 오빠인 소외 유 과 짜고 위 유 이 국세청에 다니는 다른 직원을 시켜 국세청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전화를 하고 위 이 이 나타나면 살해하려 기도하였으며, ⑤ 위 이의 친구인 위 윤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유인, 위 윤을 피고소인 유 와 50대 남자 폭력배들이 미리 준비해 둔 서울 서초구

대화카페 지하실로 강제납치 감금하여 1990. 5. 18. 23:00부터 5. 19. 05:00까지 위 이의 거처를 대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서초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및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 소속 경사 과, 경장 공 등은 원고 유, 망 정 등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한 후 1990. 8. 2. 원고 유, 망 정 외 1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김 등 수사담당 경찰관 등은 위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인 1990. 8. 1. 14:00경 피고들을 포함하여 도하 신문사 소속 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구속영장의 신청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이에 도하 각 신문사 기자들은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 외에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1990.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유 및 망 정 등의 피의사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1990. 8. 19.자 같은 피고 발행의 주간경향 31, 32면에 위 잡지사 소속의 기자가 위와 같은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 경찰관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은 윤 및 이 의 고소장 기재내용 등을 참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 유, 망 정 등은 1990. 8.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91. 12.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1992.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의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과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그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여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 유 및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유 및 망 정 등에 대한 위 서초경찰서의 피의사실 공표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내용의 진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유 및 망 정 등이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고 등의 위와 같은 부인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 등의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원고 등의 실명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진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서초경찰서 수사담당 경찰서 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는 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등의 피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강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피고들의 별지 기재 기사는 위 서초경찰서가 원고 유 등에 관하여 그 내용과 같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기사화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유 등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기사들은 그 제목에 별지 기재와 같이 『이혼소 제기당한 간통 여인 남편 청부폭행』 『춤바람 주부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30대 남편 친구 청부폭행』 『이혼소송 주부가 청부폭행』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 남편에 청부폭행』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 등이 마치 청부폭행행위를 한 것 같은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 등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부인사실을 조사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의자들의 실명이나 주소를 그 보도자료에 기하여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당성 판단과 따로이 그 보도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등이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피의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취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초경찰서 형사계 수사담당관 등이 원고 등에 대한 구속영

장을 신청하면서 각 도하 신문기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피의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위 피고들에게 배부하여 위 보도자료 및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별지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자유 는 남편 이 이 1988. 9.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을 당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바레에서 알게 된 피의자 정 등에게 '남편을 혼내고 위자료 5억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을 주겠다' 고 부탁한 바 있고, 남편 이 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행방을 감추자 1990. 5. 18. 21:40경 피의자 정 등과 함께 남편의 친구 윤 을 모 호텔로 불러내 이 의 행방을 대라며 위 윤 을 폭행하였다」로 되어 있음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자료에 위 피고들 작성의 별지 기재 기사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각 기사내용은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사내용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벗어나 기사의 앞머리에 『춤바람 주부』라는 큰 활자의 제목을 부가하고 그 내용에 원고 유 가 춤바람이 났다는 표현을 쓰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원고 유 가 춤바람이 나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보도한 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우선 일간 경향신문에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2년 전부터 사교춤을 배운 뒤 카바레 등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오다 남편 이씨에게 발각」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1990. 8. 19. 자 주간경향에는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유 등 및 위 윤 , 이 등과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 서초경찰서의 보도자료를 참조했다거나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의 확인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 , 망 정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유 , 망 정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와 보도로 인하여 원고 유 및 망 정 이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원고 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유 및 망 정 의 연령, 신분, 교육

정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 정도 및 무죄판결 확정 후의 명예회복 조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에게 금 10,000,000원, 망 정에게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에게 금 5,000,000원, 망 정에게 금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에게 금 7,000,000원, 망 정에게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정이 1994. 10. 20. 사망한 사실,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조, 자녀들인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이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정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1,000,000원(계산근거: 3,000,000원×3/9), 원고 정, 정, 정에게 각 금 666,666원씩(계산근거: 3,000,000원×2/9, 이하 원미만 버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 유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666,666원(계산근거: 2,000,000원×3/9), 원고 정, 정, 정에게 각 금 444,444원씩(계산근거: 2,000,000원×2/9),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 유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666,666원(계산근거: 2,000,000원×3/9), 원고 정, 정, 정에게 금 444,444원씩(계산근거: 2,00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김 상 현
판사 우 라 옥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6. 2. 2.자 판결 (95나25819)

인천지방법원 1995. 6. 13.자 판결 (94가합16812)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일 유방확대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방영한 「PD수첩」에 출연한 정 씨가 문화방송사 및 「PD수첩」프로듀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거나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원고의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PD수첩」측이 신분노출을 방지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1994년 7월 5일 방영 당시 화면에 이목구비가 섬세하게 나타나 있고, 음성을 전혀 변조하지 않은 채 방송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주위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초상권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2581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정

인천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선, 김종세

피고, 피항소인 : 1.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 1995. 12. 22.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5. 6. 13. 선고, 94가합16812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1996. 2.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강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영상,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4 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 의 증언(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피고 정 본인 신문결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 원심과 당심에서의 각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

나는 위 이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결혼을 하였다가 1993. 3.경 이혼을 한 후 식당에서 주방장 등의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1955. 2.생의 여자로서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1994. 4.경 미국 앨라버마주 버밍햄 지방법원에서 미국내 실리콘 백 제조회사에 대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시술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중 3%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YMCA 시민중계실에서 그 접수와 소송대행을 맡게 되었고 그 접수과정에서 우리 나라에도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소식에 접한 원고는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몇마디 대답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답 중 일부가 같은 달 25.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약 10초간 그 육성을 변조함이 없이 그 뒷모습과 함께 방송되었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피고회사의 'PD 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하고, 이미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현재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물론 향후 30년간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는 바, 위 기획의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찾던 중 원고가 이미 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음을 알고 위 제작진의 일원인 섭외작가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여 인터뷰 승낙을 받아내게 되었다.

(4) 이에 피고회사 교양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로서 위 'PD 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인 피고 정 는 1994. 6. 4. 피고회사에서 원고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술 사실을 주위에 숨겨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정 에게 원고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을 붙여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원고의 요구나 피고 정 의 약속은 없었다.

(5) 피고 정 는 원고를 취재한 후 1994. 7. 5. 위 'PD 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김혜정'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고 목소리는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였으며, 원고를 취재한 방송은 위 프로그램의 총방송

시간 40여 분 중 1회 28초간, 2회 24초간 모두 52초간이었는데, 그 방송의 내용은 원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6)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 있어 원고의 모습이 비록 그림자처리 되었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우측 옆모습 즉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원고의 음성이 전혀 변조되지 않음으로써 위 방송을 시청한 원고 주위의 가족, 친척, 친구들 중 여러 사람이 원고를 알아보고 원고의 수술사실을 거론하거나 원고에게 위 수술과 방송출연사실에 관하여 문의해 왔다.

(7) 한편 TV에 인터뷰를 방영하는 경우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서 화면처리하는 방법으로 피촬영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는 방법, 그림자를 촬영한 후 방영하는 방법,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는 방법 등이 있고 또한 간단한 기계처리에 의한 음성변조방법도 있는데 피고회사에서는 출연자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 선택하게 하지 아니하고 담당 PD가 독자적 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 정 는 원고에게 위 화면처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음성변조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와 같은 방송방법을 채택하였다.

나.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PD 수첩'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정 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거나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원고의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은, 공개된 사항이 고도의 비밀영역에 속하지

않고 공개된 집단이 소규모의 가족적 집단이고, 원고가 '뉴스데스크' 시간의 육성방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화인터뷰 도중 스스로 방송출연을 제의하고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방송의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가 손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방은 여성의 성적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보존의 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사항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밖에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방송의 공적인 목적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의 방법에 있어 피고 정 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방송이 적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및 이혼경력, 원고가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2.

재판장 판사 유 현
판사 임 숙 경
판사 김 창 석

1심 判 決 文

사 건 : 94가합16812 손해배상(기)

원 고 : 정

인천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 고 : 1. 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교양제작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 1995. 5. 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방송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중인 1994. 5. 27.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교양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로서 「피디(PD)수첩」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제작진의 일원인 피고 정로부터 피고회사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방송할 계획으로 취재를 하고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 4. 피고회사에 방문하여 취재에 응하였다. 나. 피고 정 는 원고를 취재한 후 1994. 7. 5. 위 「피디(PD)수첩」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김혜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였으나 목소리는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였으며, 원고를 취재한 방송은 위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 40여 분 중 1회에 28초간, 2회 24초간 모두 52초간 방송이 되었는데, 그 방송의 내용은 원고는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이 취재에 응하면서 피고 정 ○○에게 자신의 신분이 주위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 ○○는 원고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원고의 모습과 음성을 변조하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이목구비가 섬세하게 나타나 있고, 더군다나 원고의 음성은 전혀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인격권, 초상권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정 ○○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정 ○○의 사용자로서 피고 정 ○○

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17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나(헌법 제21조 제4항, 제27조), 한편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헌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표현의 자유, 특히 TV 등 대중 언론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 정치의 유지와 현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사회에서의 공중매체에 의한 보도 행위는 그 본질상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어 이러한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이나, 공중매체의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개인이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방송이나 보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으나 언론매체가 이러한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언론매체측의 위 조건 등 이행상의 과실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념이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언론매체로 하여금 그 보도행위에 있어 이른바 숨릴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강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아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및 피고 정 본인신문결과와 이 법원의 녹화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결혼을 하였다가 1993. 3.경 이혼을 한 후 식당에서 주방장 등의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1955. 2. 생의 여자로서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위 부작용의 경우 대부분 삽입하였던 실리콘 백을 제거함으로써 원상회복되는 사실, 1994. 4.경 미국 앨라버마주 버밍햄 지방법원에서 미국 내 실리콘 백 제조회사에 대해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2억5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중 3%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YMCA 시민증계실에서 그 접수와 소송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그 접수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소식에 접한 원고는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증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몇마디 대답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대답 중 일부가 같은 달 25. 피고회사의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 원고의 육성을 변조함이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회사의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은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재하고, 이미 시술받은 사람들에게 YMCA 시민증계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현재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물론 향후 30년간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유방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한 사실, 위 기획의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찾던 중 원고가 이미 1994. 5. 말경 위 YMCA 시민증계실에 접수신청을 하였음을 알고 위 제작진의 일원인 섭외 작가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여 인터뷰 승낙을 받아내게 된 사실, 피고회사에는 인터뷰를 방영하는 경우 신분보장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내규 등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관례상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서는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피촬영자의 영상 중 중요부분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는 방법, 그림자를 촬영한 후 방영하는 방법, 뒷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는 방법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의 경우 방송출연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피고회사의 판단으로 신분노출이 되는 경우 어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을 변조하여 방송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정 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

는 조건을 달아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원고의 요구나 피고 정 의 약속은 없었던 사실(이에 반하여 피고 정 가 원고에게 음성 변조 방송을 약속하였다는 증인 이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 정 는 이 사건 방송을 제작 하면서 출연자 중 미혼의 여성으로 무면허의사에 의한 불법시술자일 뿐더러 출연자 본인 이 음성변조를 요구하는 출연자에 대하여는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여 방송을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무면허 의사에 의한 불법적인 시술이 아니었고, 원고의 나이와 결혼 경력,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소리까지 숨겨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한 사실. 그 방송 후 원고를 아는 일부 주위사람들이 방송된 사람이 원고가 아니냐는 등의 확인전화를 걸어 오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그녀에게 유방성형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도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방송 중 원고를 취재한 부문이 비록 음성변조는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화면을 그림자처리 하였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 중 원고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들도 원고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나이, 직업, 결혼 및 이혼 경력 등과 원고가 그 부작용에 대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 손해배상을 위한 접수를 하였고, 비록 피고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취재에 승낙을 하였고, 당원에 시술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것과 그 부작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방송의 목적과 내용, 피고측에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과 앞서 실시한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함에 있어 방송관례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방영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5. 6. 13.

□

재판장 판사 이 흥 권

판사 조 효 상

판사 김 원 일

연기자협회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5백만원을 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2. 15.자 판결 (95가합26099, 95가합9797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15일 원고(반소피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피고 일요신문사, 피고(반소원고) 이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1.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 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요신문은 1995년 2월 19일자(실재 발행일 14일) 『이 폭탄발언』제하의 기사에서 연기자협회장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한편, 같은 달 17일 프로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한명회로 착각중?』이라는 제목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는 표현을 써서 피고 이 는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이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일요신문사와 이 를 상대로, 이 는 한국프로듀서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문사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었던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여 신문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진정서의 내용을 조작한 것처럼 인식케 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기사에 위와 같이 원고 소속 PD 김 의 반박주장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과 진정서를 사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위 진정서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표현 즉 '행정오류'라고 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기사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의례적인 변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 진정서가 원고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피고 신문사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반소에 관하여는 '프로듀서연합회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위 이모 씨가 피고 이 를 지칭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프로듀서의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 이 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게재, 반포행위는 피고 이 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또한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피고 이 를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피고 이 의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요신문의 위 기사에 대해 1995년 3월 18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5서울중재47), 중재결과 불성립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론문 게재 결정(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1995년 7월 5일)을 받은 바 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26099(본소) 손해배상(기)
95가합9797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의 3 라이프오피스텔 1313호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日曜新聞社)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35
대표이사 심상기, 백승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서동우, 이후동, 전병하, 최병호, 한이봉,
정의중, 유욱, 박형연, 양시경, 도건철, 나승복, 강현, 박현욱, 이형석,
김도형, 유광현, 주한길

피고(반소원고) :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6의 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변론종결 : 1996. 1. 25.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9. 부터 1996. 2.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7.부터 1996. 2. 15.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 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 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사이에 생긴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 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 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반 소 : 원고는 피고 이 에게 금 100,000,000원 및 1995. 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2, 강제2호증, 강제3호증의 1, 2, 3, 강제4호증의 1, 2, 강제5호증의 2, 3, 4, 강제6호증의 2, 3, 4, 5, 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 박 , 박 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9. 5. 방송사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재직 중인 프로듀서(PD)를 회원으로 하여 창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고만 한다)는 주간지인 '일요신문' 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이 는 방송 연기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한국연기자협회의 회장이다.

나. 피고 이 는 한국연기자협회(이하 연기자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자가 방송국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되어 방송에 출연하는 사례가 잦게 되면서 기존의 위 연기자협회 회원들과 비회원 및 프로듀서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자 위 협회 이사들과 상의를 거쳐 "위 연기자협회의 회원들은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된 위 협회 비회원 연기자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PD와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 비회원들과 프로듀서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또는 불륜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위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으로 인하여 시청율이 조작되고 국민문화의 질이 떨어지며 국민정서까지 마비시킬지도 모르니 상급지도부서인 공보처에서 위 협회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위

피고명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어 위 피고의 관여없이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이 위 진정서초안의 문구를 일부 다듬고 번호(1, 2, 3...)나 참고표(*)를 첨가하여 위 진정서를 완성한 후 1994. 12. 20.경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다.

다. 대통령 비서실은 위 같은 날 위 진정서의 처리를 공보처에 맡겼고, 위 공보처는 위 진정내용을 각 방송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23. 각 방송사에 위 진정서 사본과 함께 위 진정내용을 적절히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방송사는 같은 달 29.경 다시 위 진정내용을 각 방송사 드라마국에서 처리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위 진정서 사본을 각 방송사 드라마국에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가 1995. 1. 28. 발행한 '프로듀서' 라는 협회보(통권제67호)에 방송사가 공보처로부터 받은 위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라. 피고 신문사의 기자인 소외 조 , 박 는 1995. 2. 12.(일요일) 01:00경 피고 이 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이 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위 진정서와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위 진정서가 같은 것인지를 물어 봤고, 이에 위 진정서 초안이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고는 위 기자들에게 "위 진정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번호(1, 2, 3...)나 참고표(*)가 없었는데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에는 위 번호나 참고표가 있고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것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신문사는 같은달 19.자(실제 발행일자 같은 달 14.) 일요신문(제144호) 제1면 표지에 「이 폭탄발언」이라는 큰 제목 하에 'PD 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PD 연합회 vs 연기자협회 전면전 조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시 제6면에서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vs PD 협회 힘 겨루기'라는 소제목과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를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 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 연합회에서 조작했다는 얘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서 문안은 누가 작성했나. △...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며, 또 위 신문 8면에서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

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제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실었고, 한편으로 위 기사에 뒤이어 위 같은 면에 '방송 길들이기나 행정 오류' 라는 소재목과 함께 「이에 대해 프로듀서 연합회의 김 PD는 “공보처장관 명의로 KBS 사장에게 보내졌고 이를 최 부주간이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라는 원고 소속 김 PD의 반박주장을 게재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단체포함)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는 피고 이 와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위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었던 위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여 위 신문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진정서의 내용을 조작한 것처럼 인식케 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기사에 위와 같이 원고 소속 PD 김

의 반박주장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과 진정서를 사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위 진정서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표현 즉 '행정오류' 라고 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의례적인 변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 진정서가 원고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피고 신문사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신문사의 위법성조각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5. 1. 28.자 발행의 '프로듀서'라는 협회보에 위 연기자협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다는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과 피고 신문사의 기자들이 피고 이 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이 가 위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의 초안과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는 번호(1, 2, 3...)나 참고표(*)가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점이 다르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박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의 위 취재기자들은 위 이 와의 인터뷰 당시 위 이 로부터 위 연기자협회 사무실에 가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 원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위 인터뷰 다음날에 위 연기자협회 사무실에 가서 위 진정서원본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원본이 그 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같은 날 원고 연합회 회장인 김 PD를 만나 위 김 에게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와 위 이 가 애당초 작성하였다는 진정서 초안이 다르다는 취지의 위 이 의 말을 전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김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보처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에 첨부된 진정서 사본을 위 기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위 진정서사본을 그대로 위 '프로듀서'지에 전제한 것이라는 답변을 한 사실, 위 취재기자들은 다시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진정서의 사본을 확인한 결과 그 진정서의 내용이 위 '프로듀서'지에 실린 진정서와 그 내용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처나 대통령비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진정서 사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아예 포기하고 막연히 위 진정서를 정부기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표현을 일부 순

화하거나 삭제하여 원고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막상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마치 위 연기자협회에서 피고 이 ○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위 진정서의 내용을 원고가 임의로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가 1995. 2. 14. 오전에 발행한 같은 달 19.자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신문사의 기사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수도 없고, 위와 같이 위 취재기자들이 위 김 ○ 로부터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보처로부터 전달받은 진정서 사본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진정서의 사본과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그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공보처에 보관된 진정서 사본에 대한 확인이나 피고 이 ○ 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일간신문과는 달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주간신문인 피고 신문사발행의 위 일요신문에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상 피고 신문사로서는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신문사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피고 신문사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신문사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이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 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이 ○ 는 원고가 위 '프로듀서' 지에 실은 진정서의 내용과 위 피고가 작성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피고 신문사의 위 기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위 일요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와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같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고,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의 초안과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번호(1, 2, 3...)나 참고표

(*)가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점이 다르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신문사가 그 발행의 위 신문에 피고 이의 위 인터뷰기사와 함께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이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은 피고 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문구가 일부 다듬어지고 번호(1, 2, 3...)나 참고표(*) 등이 첨가되어 1994. 12. 20.경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되었는데 피고 이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신문사와의 위 인터뷰에 응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이가 위 진정서 초안이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여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와 위 피고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이 다른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변조되었고 또한 그 변조가 원고에 이루어 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이의 위 인터뷰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신문사가 함부로 피고 이의 위 인터뷰내용을 과장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원고가 위 연기자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변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피고 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 신문사의 1995. 2. 19.자 일요신문의 실제 발행일(같은 달 14.)이후인 같은 달 17. 발행의 '프로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한명회로 착각중?'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른바 연예계비리 사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름을 부은 역할은 두말할 것 없이 청와대에 무고성 투서를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20일에 청와대에 보낸 공문이 알려지면서 연기자협회는 한때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중략) 이 투서는 적어도 이번 사건을 증폭시키는 역할은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이 너무나 야비하고 졸렬한 것이어서 과연 뜻한 바의 목적을 달성할 지 의문. 게다가 정계진출설이 파다한 연기자협회 회장 이모 씨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의 거취와 관련해 이러저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특정정당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다소 성급한 추측도 있다. 일이 이쯤되자 이모 씨 좌충우돌하여 진화에 나섰다

는데, 한다고 한 것이 역시 그 수준에 맞게 오리발 작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투서는) 내가 쓴 게 아닌데…”라며 시치미를 떤 것. 그는 이 인터뷰에서 한술 더 떠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기자협회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며 앞뒤 안맞는 소리를 계속했다. 이런 작태를 본 모 프로듀서는 “그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일을 벌였다 망신만 당한다”고 일갈. 여기에 한마디쯤 덧붙인다면 “스스로를 혹시 드라마 속의 한명회쯤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자기 이름으로 낸 투서도 잡아 떼는 걸 보니 한명회는 커녕 남자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다.」라는 기사를 게재,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프로듀서(PD)를 회원으로 하여 창립된 단체이고, 피고 이○○는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회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위 ‘이모 씨’가 피고 이○○를 지칭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프로듀서의 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 이○○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게재, 반포행위는 피고 이○○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또한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피고 이○○를 야비하고 졸렬하게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피고 이○○의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회보에 실린 기사는 피고 이○○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서를 보내고, 위 진정서를 원고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평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평의 자유를 가지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논평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이 가해진 경우나 인신공격에 달하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회보에 실린 기사 중 피고 이○○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야비하고 졸렬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

피고 이○○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이○○를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한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의견이 표명된 논평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기사들이 정당한 사실에 기초한 논평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는 또, 위 회보의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기사 중 피고 이○○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전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임을 원고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 이○○가 야비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무고성 투고를 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이○○는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자가 방송국 프로듀서에 의하여 발탁되어 방송에 출연하는 사례가 잦게 되면서 기존의 연기자협회 회원들과 비회원 및 프로듀서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자 위 협회 이사들과 상의를 거쳐 "위 비회원들과 프로듀서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또는 불륜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위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으로 인하여 시청율이 조작되고 국민문화의 질이 떨어지며 국민정서까지 마비시킬지도 모르니 상급지도부서인 공보처에서 위 협회 비회원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위 연기자협회의 회장인 위 피고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강제1호증의 1, 2, 강제2호증, 강제7호증의 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전거래관계 또는 불륜관계 및 시청율 조작' 등의 위 진정서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원고를 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무고했다고 원고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 이○○를 위와 같은 투서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한 점은, 피고 이○○가 애당초 작성한 위 진정서 초안이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위 연기자협회 이사들에 의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이 다만 문구수정과 체계만 일부 변경되었는데 피고 이○○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위 진정서가 원고 발행의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후 피고 신문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위 진정서 사본에는 번호나 참고표가 있고 그 내용의 순서가 일부 바뀐

것일 뿐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을 뿐 위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위 진정서와 피고 이○○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이 같은 내용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 신문사 발행의 신문에서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마치 피고 이○○가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다른 내용의 진정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것처럼 묘사한 피고 이○○의 인터뷰기사가 실렸고 원고가 이를 위 회보에 위 인터뷰기사를 전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이 피고 이○○는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원고 발행의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가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문구와 그 체계만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마치 진정서 내용이 달라진 것처럼 피고 신문사 발행의 일요신문에 피고 이○○의 인터뷰기사가 실리고 원고가 위 인터뷰기사를 위 회보에 전재한 것이므로 위 회보의 기사내용은 진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위 인터뷰에서 “위 ‘프로듀서’ 지에 실린 진정서는 내가 쓴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은 진실이고, 원고는 주간신문인 피고 신문사 발행의 일요신문 기사 중 마치 피고 이○○가 애당초 작성한 진정서 초안과 다른 내용의 진정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된 것처럼 묘사한 피고 이○○의 인터뷰기사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회보에 위 인터뷰기사를 실음에 있어 위 이○○의 인터뷰기사내용이 진실이며 또한 위 이○○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고도 위 제출된 진정서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회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기사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그 위자료로서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일부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 이○○에 대하여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 야비하고 졸렬하다’라고 표현한 기사와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하였다는 기사가 원고 발행의 위 회보에 게재, 반포되어 피고 이 〇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위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회보의 발행부수와 구독자의 구성, 원고와 위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자료로 위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요신문의 실제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일자인 1995.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 이 〇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회보의 발행일인 1995.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문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피고 이 〇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 〇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 〇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5. □

재판장 판사 박 효 열
 판사 양 태 경
 판사 유 헌 종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소수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9명 중 일부라는 점,
특히 원고 중 2명은 전주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5. 14.자 판결 (94가합9151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14일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오 씨 외 14인이 조선일보사<월간 「필」(FEEL) 발행사>와 필 기자 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조선일보는 원고 오 씨에게 각 1천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선일보사의 필은 1994년 8월호 『독점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하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을 시작,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바 없고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를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보도되어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받거나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림을 당하였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에서 원고들을 특정한 바 없고 원고들은 취재원과 같은 경력을 갖지 않아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특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 이 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이 사건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게재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14),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용결정(94카기4881 서울지방법원 제50부 결정)을 받아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91515 손해배상(기)

신청인 : 1. 오

서울 영등포구

2. 이

전주시

3. 김

서울 서초구

4. 김

서울 영등포구

5. 김

서울 은평구

6. 정

서울 서초구

7. 김

서울 관악구

8. 김

서울 은평구

9. 라

서울 동작구

10. 신

서울 마포구

11. 류

전주시

12. 김

서울 송파구

13. 김

구리시

14. 황

서울 서초구

15. 김

서울 동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권규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유효석, 김병주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2. 신

위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이병선, 최승인, 장원찬

변론종결 : 1996. 4. 23.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 , 이 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 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1994. 10. 24.까 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오 , 원고 이 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 머지 원고들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 , 이 에게 각 금 2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 1, 2호증, 강제3호증의 1, 2 강제4호증의 1, 4, 5 내지 9, 강제5호증의 1, 2 강제6호증, 강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위 강제4호증의 6, 9는 각 일부기재에 한한다)와 증인 조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는 「조선일보」라는 국내 유력 일간지 및 「필」(FEEL) 등을 비롯한 각종 월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신 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필」 지의 기자이다.

(2) 위 「필」 지 1994. 8.호(통권 12호) 표지에는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 - 운동권 선배와의 연애 끝에 배신당함 - 휴학 - 호스티스생활 - 재벌 회장과 아파트에서 동거 - 복학 - 두번째 휴학』이라는 표제가, 49면 목차란에는 『독백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 - 운동권 선배와의 연애 끝에 배신당함 - 휴학 - 호스티스생활 - 재벌 회장과 아파트에서 동거 - 복학 - 두번째 휴학』이라는 목차가 각 게재되었고, 126면에는 『독점 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26면에서 131면 까지 사이에 별지 기사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와 함께 127면에는 약간 벌린 입술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29면에는 배꼽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31면에는 얇은 속옷을 걸친 둔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각 게재되었다.

(3) 피고 신 은 1994. 6. 말경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권 출신 여학생의 도덕적 타락과 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일반 독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킬 의도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기획안을 작성하여 위 「필」지의 부장인 소외 조 에게 제출하였고 위 조 을 비롯하여 위 「필」지의 주간, 차장 그리고 수석기자는 위 기획안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위 「필」지에 보도할 것을 허락하였다.

(4) 위와 같은 보도 허락을 받은 피고 신 은 그 즈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피고들은

피고 신 이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실제의 경험담을 취재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위 「필」지의 편집진에게 제출하였고, 위 「필」지의 편집진은 이 사건 기사를 위 1994. 8. 호 「필」지에 게재하여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국에 걸쳐 약 100,000여부를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7.29.자와 같은 해 8. 5.자 조선일보 10면 하단 광고란에 『서울대 재학 중 호스피스 생활한 여대생 충격적인 과거를(날날이) 공개한다』라는 기사제목으로 위 1994. 8.호 「필」지를 광고하였다.

(5)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대를 1986년에 입학(이하 86학번으로 약칭한다)한 여학생은 총 49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모두 그 중의 일부이며, 원고 오 , 원고 이 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원고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바 없고, 피고 신 의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취재에 응하였거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데 승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가 위 「필」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로는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 (특히 원고 오 , 이 은 더욱 그러하다) 받거나 터무니 없는 억측에 시달림을 당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특정한 바가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 갖는 경력을 갖지 않아 이 사건 기사 중에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특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기사는 단순한 오락거리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

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재의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 , 원고 이 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 사건 기사의 모델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여학생」 등이 있는데, 비록 원고들이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학생은 아닐지라도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 중에는 위와 같은 특례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 이러한 요소는 원고들 주변사람들이 모델을 추지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는 요소라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모델을 추지할만한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요소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요소라 할 것이다)이고, 이 사건 기사내용 중의 「학교」, 「대학」, 「출신지」, 「휴학」, 「특례재입학」, 「서클」 등의 요소와 「등장 인물의 구체성」 「앞 뒤가 완벽한 상황의 설정과 줄거리의 흐름」 등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한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사의 제목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보도 공표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위 「필」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위 피고 및 위 「필」지의 편집진들인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필」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성별, 나이와 사회적 위치 및 특정의 정도, 피고회사의 규모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그 게재경위 그리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과 강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그후 위 「필」지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공표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오 , 이 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2,000,000원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오 , 원고 이 에게 각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위 1994. 8. 호 「필」지의 최초 배포일인 1994. 8. 1.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6.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4.

재판장 판사 장 경 삼
 판사 김 경 호
 판사 박 범 계

기사내용

「나는 지금 또 휴학 중이다... 서울대 입학, 학교에서 별로 튀지도 않던 가난에 찌들린 집안의 여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떠들썩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 지났다.

고향 전주에 있는 모교의 정문에 내 이름이 걸려 있던 그 시절... 86년 3월 나는 그런 동생들을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대 뒤편 관악산 기슭의 기숙사. 그곳은 나의 해방지였다... 나는 사회대에서 꽤나 지명도 높은 서클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점점 투사가 되어갔다... 거기서 나는 운동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말았다. 서클 선배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건 운명이었고 불행이었고 파멸의 시작이었다... 그의 별명은 <던레닌>이었다... 첫경험. 남들은 아프다고 했지만 난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황홀했다... 내 몸은 마냥 뜨거웠고, 환희에 몸을 떨었다. 내 육체는 그런 구조를 가졌던 것이다. 내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렇게 뜨겁고, 끈적끈적한 육체... 나는 삶에 생각이 넘쳤고, 새학기 들어서는 더욱 열심히 운동을 했다. 박종철 군 사망과 호헌철폐 운동이 합쳐져 학교와 사회 모두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 전위에서 튀는 행동대원이었다. 그 운동의 와중에서도 나와 그 선배는 사랑을 불태웠다. 내 몸은 점점 더 길들여져 갔고... 그해 6월 우리는

승리했고 여름은 온통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 여름 승리의 환희를 채 느껴볼 틈도 없이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느날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녀는 서울 모여대 4학년이었다...〈그이와 헤어져 주세요. 우린 결혼할 사이예요... 제 몸속에는 이미 그이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단지 저주했다. 나의 운명, 그의 위선, 내가 배운 지식, 열정, 민족, 민주, 해방, 자유... 그 모든 걸 저주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쌓아왔던 것들은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 어디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술만 마셨다... 자취집 근처에 있는 서너 평 남짓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살다시피 했다. 40대 초반의 그 카페 여주인은 술 파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어렵게 살려는 사람에게만 어려운 거야. 쉬운 길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거든〉 나는 쉬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녀의 웃음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얼마 후 나는 그 여자의 소개로 강남의 어떤 룸살롱으로 나갔다... 첫 출근날 나는 좁은 당황스러웠지만 훌륭히 영업을 해치웠다... 적당히 몸을 허락했다. 마담이 내가 서울대 여학생이라고 귀땀해준 모양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히히덕거리면서 연신 정말 서울대생이냐고 묻곤 했다... 그는 2차를 요구했다. 나는 〈좀 비싸다〉고 했다. 왜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서울대생이니까... 이때 이미 나는 프로가 되어 있었는데도 몰랐다... 급기야 하루는 고급 요정에 차출까지 되었다... 그날 나는 제법 높은 분들을 모셨다. 관계와 범조계 사람들인 것 같았다. 뻘한 얘기지만 지체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남자들은 모두 똑같다. 처음엔 점잔을 빼던 그들도 나중에 술에 취하자 내 몸을 탐내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건설업으로 유명한 재벌회장의 모임이 있었는데 내게 회장의 पार्ट너가 되는 행운이 왔다... 얼마 후 그 회장은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고는 수시로 찾았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중년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바로 이사를 했고, 회장과는 연락을 끊었다... 한동안 쉬었다... 결국 옛날마담을 찾아 심심풀이겸 다시 룸살롱엘 나갔다... 하루는 세 명의 남자가 아주 거나하게 취해 찾아왔다. 한 명은 젊었고 두 명은 회사 중역급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난 첫눈에 그 젊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옛날 내 첫 사랑의 친구이자 동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를 더 취하게 만들어 유혹했고, 결국 호텔로 같이 갔다... 거의 인사불성이 된 그는 연신 너털웃음을 지으며 10만원권 수표 다섯장을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덮쳤다... 아침에 정신이 들자 그는 계속 쓴웃음을 지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난 그의 웃음 속에서 비굴함을 보았다... 복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공부는 재미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과거를 숨겨가며 결혼할 생각은 없고, 또한 남자들의 위선에 더 이상 속아가며 살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

취재원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기사가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인 점, 원고에게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2.자 판결 (95나39467)
서울지방법원 1995. 9. 15.자 판결 (94가합5363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일 광고 및 의상모델 진 씨가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사(문화일보 발행사) 및 소속 기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들이 공표한 것이 진실한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항소를 인정, 원고가 승소한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사건의 박○○ 씨가 「검찰수사단계에서 원고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라고 계속 진술하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수사검사도 이를 확인해 주고 공소장에도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재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라는 점, 원고에게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때까지의 시간 내에는 그 확인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인 것으로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진 씨는 피고들이 문화일보 1994년 6월 9일자 사회면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 여자 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출입』 제하의 기사에서 증견모델 진모 양(26)이 고급 룸살롱 및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한 박○○ 씨를 호텔과 여관 등지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의 성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증견모델로 볼 정도면 이 사건기사의 내용(원고에게 미칠 영향, 아울러 게재 시각을 다룰 정도의 급박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본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도해 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록의 일부 기재와 담당수사검사의 말만 듣고 사실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 씨를 원고의 예명이라 오인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 1995년 9월 15일 판결)했다.

한편 원고는 이에 앞서 이 기사와 관련 1994년 6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고측이 원고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과의 일괄타결을 요구하여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160)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인용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년 10월 27일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39467 손해배상(가)

원고, 피항소인 : 진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최창귀, 송달룡, 박종관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現代文化新聞)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진모 양은 중견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쓴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67. 9. 7.생으로서 1989. 4. 경부터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텔레비전 광고모델 및 의상모델로 활동하는 자로서,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누구를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위 박○○을 접대하거나 호텔 등지를 함께 다닌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 위 박○○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을 접대한 여자는 사실은 소외 이△△이라는 광고모델이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본명 이외에도 이○○, 진○○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본명인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박○○으로서도 그녀의 본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이름이 본명이고 예명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위 여자를 지칭할 때 때로는 이○○란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 진○○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시한 잡지에 실려있는 원고 진○○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자 위 박○○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도 공소장에 위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1명이 진○○(여 26세)이라고 기재하여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 이○○은 위 박○○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 중 1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1)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중견모델인 진모 양이 갈비집 여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기피의자인 위 박○○을 만나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 왔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2) 또한 기사에 표시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때 그 특정을 위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과 배치 및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기사에는 원고의 이름이 완전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 26세의 진씨 성을 가진 중견모델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기사가 게재될 당시 26세의 중견모델이고 원고의 성(姓)도 희성(稀姓)이라 할 수 있는 ‘진씨’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방송이나 모델

업계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기사에서 지칭하는 '진모(26) 양'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기사에 지칭된 피해자도, 원고로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마치 원고가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서 술집에서 접대하고 호텔을 출입한 연예인이나 광고모델 중의 한 명인 것처럼 적시가 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의 항변

가.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무릇 신문이나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 때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대기업의 접대비리 및 이에 연루된 유명연예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접대비리에 편승하는 연예계의 풍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먼저 이 사건기사가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나아가 이 사건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 2호증의 5, 6, 16, 18, 19, 20, 22, 23, 24, 29, 강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피고 이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은 1994. 6. 1. 경 법조출입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의 한 검사로부터 “며칠 후 텔런트 김○○이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 출두하게 되면 내가 이 기자에게 알려줄테니 함께 얼굴이나 구경하자”는 농담조의 말을 들었는데,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4~5일 전 소외 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톱기사로 특종 보도한 재벌 사칭 사기범인 소외 박○○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도중 위 박○○에게 속아 술집 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박○○을 접대해 준 여자들의 명단에 김○○, 최○○, 진○○의 이름과 나이가 공소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위 김○○이 연예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수사검사에게 찾아가 문의하였던 바, 그로부터 위 김○○이 텔런트임을 확인받고 더 나아가 진○○도 꽤 알려진 모델인 모양이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열람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박○○에 대한 경찰수사기록에 따르면, 위 박○○에게 접대할 여자를 소개하였다는 ○○갈비집 주인인 소외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위 여자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 다만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와 의견서에 위 여자의 이름이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박○○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처음 조사받을 때 위 여자의 이름을 ‘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며칠 뒤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라고 지칭한 위 여자는 예명이 ‘진○○’이라는 영화배우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보여준 영화잡지에 게재된 원고 진○○의 사진을 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아울러 자신을 접대한 또다른 여자 중의 하나는 텔런트 김○○이라고까지 말한 사실, 그 후 위 박○○을 검찰에 제출한 두 차례의 진술서에서도 역시 자신을 접대한 위 여자는 광고모델인 ‘진○○’이라는 여자가 분명하고 위 여자가 자신은 영화배우도 겸한다고 말하였으며 며칠 후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영화촬영이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위 여자가 ‘이△△’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며, 자신에게 위 여자를 보내준 위 장미갈비집 주인의 말에 따르면 위 여자는 대한항공(KAL)의 모델로서 김포공항에 걸려있는 광고판에 나오는 세 명의 여자 중 제일 좌측에 있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 사실, 위 박○○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말미에는 원고에 관한 기사가 실린 잡지에서 발췌한 원고의 사진부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위 잡지의 사진이 원고본인의 사진이란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박○○은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 첨부된 원고의 위 사진을 지칭하면서 위 여자가 자신을 접대한 ‘진○○’이란 여자라고 한 사실, 이러한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위 박○○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위 ‘진○○’이라고 하는 여자나 원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박○○에 대한 공소장에다 위 박○○을 접대할 여자 중의 한 명으로 ‘진○○(여 26세)’이

라고 기재한 사실. 그러자 피고 이 ○○은 위 공소장에 나타난 '진 ○○'이란 이름이 원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담당수사검사로부터 확인하고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본사사무실로 송고하여 이 사건 기사게 게재되게 된 사실. 다만 피고 이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전에 원고에게 위 박○○을 만나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화연락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김포공항에 걸려있는 광고판에 나오는 세 명의 여자들 중 좌측의 여자의 신원에 대해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취재기자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취재기자가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한 뒤 기사화한 경우라든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이 용이하지는 아니하나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의 입장에서 볼 때,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으로 지칭된 여자의 성명이 이○○, 진 ○○ 또는 이△△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위 박○○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원고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접대한 여자가 위 사진 속의 여자라고 계속 진술하고 그 여자의 이름과 직업도 실제이름 및 직업과 같은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이라는 사실도 위 여자에게서 확인했다는 진술까지 덧붙이고 있어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덧붙여 위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수사검사도 위 여자 중의 하나가 중견모델인 원고라고 확인해 주고 공소장에도 원고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진 ○○ (여 26세)'라고 기재한 점 등 그 취재원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기사는 그 성격상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라는 점, 위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원고에게 위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때까지의 시간 내에는 그 확인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위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어도 원고로부터 곧바로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가사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취재기자가 이를 사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 이 ○○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김포공항 광고판의 모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박○○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명인

것으로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 원고라고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증권모델 진모(26) 양' 이라고 공표한 것이 진실한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

재판장 판사 이 근 응
판사 주 한 일
판사 김 상 근

1심 判 決 文

사 건 : 94가합53636 손해배상(기)

원 고 : 진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최창귀, 송달룡

피 고 : 1.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現代文化新聞)

서울 중구 무교동 96

대표이사 이규행

2. 이

서울 중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이동학, 민병기

변론종결 : 1995. 6. 2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1995. 9.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신문기사), 강제2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2(사건송치서), 3(압수물 총목록), 4(기록목록), 5(의견서), 6(수사결과보고서), 18(진술조서), 19(피의자신문조서), 23, 24(각 진술서), 28(소송기록 표지), 29(공소장), 강제3호증의 1(고소장), 2(수사보고서), 3(진술서), 4(진술조서), 5(숙박등록카드), 6(비씨카드매출전표), 7(진술조서), 18(보도자료), 19(이력서), 20(월별잡지촬영현황표), 21(시즌별 활동내역), 22(사실증명), 23, 24(각 수사보고서), 25(진술조서), 26(진술서), 27(진술조서), 28(참고자료표지), 29 내지 41(각 진술서), 강제4호증의 1(신청사건기록표지), 2(서증목록), 3(정정보도심판 청구), 4(중재신청사건기록등본송부), 5(중재신청사건기록), 6(목록), 7(중재신청서), 8, 9(각 중재조서), 10(결정), 강제5호증(신문기사), 강제6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 이 ○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 9. 7.생으로서 1989. 4. 모델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아래 텔레비전 광고모델 및 의상모델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대문화신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등을 발행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 ○ 은 위 신문의 기자인 사실, 원고는 갈비집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누구를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소외 박○○을 접대하거나 호텔 등지를 함께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화일보의 1994. 6. 9.자 사회면 좌측상단에 『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제목과 『여자탤런트 3명 거액받고 룸살롱-호텔 출입』이라는 소제목 아래 「탤런트 등 유명연예인 3명이 고급 룸살롱 등에 거액의 돈을 받고 접대부 노릇을 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

은 서울 지검 형사1부 양경석 검사가 9일 대기업 사장 등을 빙자해 룸살롱 여주인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힌 박○○ 씨(38·대구시 중구 종로1가)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유명 텔런트 김모(23), 최모(23), 진모(26) 양 등이 박 씨에게 속은 룸살롱 여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호텔과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접대를 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중략) 또 최양과 진양 등도 박씨에게 속은 강남구 역삼동 K룸살롱 주인과 C갈비집 주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씨를 만나 접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진모 양은 중견 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된 사실, 위 박○○은 자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소외 이△△이 자신을 접대한 연예인이지만 위 이△△이 자신을 접대하면서 그 이름을 진 ○○이라며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사용한 까닭에 위 이△△의 이름을 진 ○○○으로 잘못 알고 수사과정에서 이 이△△의 이름을 진 ○○○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접대행위를 한 연예인을 진 ○○○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여 위 박○○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 이 ○○○은 위 박○○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위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를 위 박○○을 접대한 연예인으로 오해하고 원고를 진모(26) 양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불기소증명원), 을제2호증의 1(공소부제기사유고지), 2(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기사에 26세의 진씨 성을 가진 중견 모델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방송이나 모델 업계에 종사하는 26세의 여성으로서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하는 「진모(26) 양」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

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이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기사의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점은 앞서 본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이 사건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강제2호증의 1, 2, 3, 4, 5, 6, 18, 19, 23, 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은 1994. 6. 1.경 법조 출입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한 검사로부터 「며칠 후 텔런트 김○○이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 출두하게 되면 내가 이 기자에게 알려줄테니 함께 얼굴이나 구경하자」는 농담조의 말을 듣고,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4~5일 전 소외 문화방송 뉴스 데스크가 톱기사로 특종 보도한 재벌사칭 사기범인 위 박○○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도중 위 박○○에게 속아 술집 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박○○을 접대해 준 여자들의 명단에 김○○, 최○○, 진○○의 이름과 나이가 공소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위 김○○이 연

예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수사검사에게 찾아가 문의하였던 바 그로부터 위 김○○이 탤런트임을 확인받고 더 나아가 진○○도 꽤 알려진 모델인 모양이더라는 말을 듣고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열람하면서,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 중 위 박○○이 자신을 접대했던 여자가 영화배우로서 자신의 예명이 진○○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4. 6. 7.자 검찰 작성의 위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접대한 여자가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서 이△△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는 내용과 위 박○○에게 접대부를 소개한 ○○갈비집 주인인 소외 김△△이 접대나가는 아가씨는 칼(KAL)청사의 모델로서 인사하는 세 명의 여자 중 제일 좌측에 있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된 위 박○○ 작성의 진술서(갑제2호증의 23, 24) 및 이에 첨부된 위 박○○이 사진 속의 여자가 진○○이라며 가리킨 사진(원고가 아닌 위 이△△의 사진임)을 보게 되었고, 이에 연예인들은 주로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의 성명「진○○」도 예명인 것으로 생각하여 위 박○○을 접대한 여자가 원고라고 오인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는 1994. 6. 3. 위 김△△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도 위 박○○을 접대한 사람의 이름은 이○○로 되어 있고, 위 박○○도 경찰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을 접대한 여자를 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1994. 6. 7.자 위 박○○ 작성의 각 진술서에 비로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수사기록에는 위 「이○○」를 소개한 위 김△△의 진술조서는 편철되어 있으나 그 접대한 본인인 「이○○」에 대하여는 조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 이○○은 원고의 집에 전화도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로서는 원고의 실제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위 박○○에 대한 수사기록에 동인을 접대한 여자의 성명이 이○○, 진○○ 또는 이△△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그 접대한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중견모델로 볼 정도이면 이 사건기사의 내용(원고에게 미칠 영향, 아울러 게재 시각을 다룰 정도의 급박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원고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찾아 위 수사기록에서 본 사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도해 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록의 일부 기재와 담당수사검사의 말만 듣고 위 사실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을 원고의 예명이라고 오인하고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하게 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책임

피고 이은 위 신문의 기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의 사용인으로서 위 신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신문에 이 사건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기사의 크기와 위 기사 게재 후 피고들이 정정기사를 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신문의 발행일인 1994. 6.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용에 의한 지연 손해금(원고는 위 신문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5.

□

재판장 판사 이 원 국

판사 권 오 준

판사 김 복 형

보도내용이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 또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96. 7. 11.자 판결 (95가합15356)

事實概要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11일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kingsbury)를 수입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호무역이 부산매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각 기사의 내용이 원고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입 통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바로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 또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부산매일신문은 1994년 9월 8, 9, 10, 11, 14, 자에 『수입음료에 표백제』, 『표백제 함유 미산음료 매년 수천t 수입』, 『수입음료 그냥 통과시켜』,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 - 수입업체 유착 의혹』,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든 수입 음료 파장』 등 제목의 기사로 원고의 제품인 수입 맥아음료 킹스베리(kingsbury)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었으며 부산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관시켜 수입 맥아음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2억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1535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금호무역(錦湖貿易)

부산 중구

대표이사 김수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소송복대리인 정철섭, 이기태, 정운

피 고 :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每日新聞)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이안형, 김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변론종결 : 1996. 5. 1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038,750원을 지급하고, 부산매일신문 1면에 3일간 연속하여 5호 활자로 별지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내지 4, 6(이상 을제1호증의 2 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박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무역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 20. 설립되어 1993. 1.경부터 지.하이레만 양조회사(G.HEILEMAN BREWING COMPANY INC.)가 생산하는 미국산 저알콜 맥아음료인 킹스베리(Kingsbury,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해 온 업체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부산매일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위 부산매일신문의,

① 1994. 9. 8.자 제1면에 “수입음료에 표백제”라는 표제 아래 “부산 검역소, 맥주대용 「킹스베리」 「솔리츠」 등서 검출, 유해 알고도 조치 미흡 … 유통, 소화·신경계 장애 등 유발 우려”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7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주)금호무역이 지난 7. 22. 부산항을 통해 들여 온 미국산 수입 맥아음료 킹스베리(Kingsbury) 87.8t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9.4ppm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식품학계에 따르면 아황산염은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장애, 다발성 신경염, 골수 위축, 성장장애 등 각종 무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략)… 이들 2개 업체는 특히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검역소에 적발되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② 같은 달 9.자 제23면에 “표백제 함유 미산 음료 매년 수천t 수입”이라는 표제 하에 “최근 금호무역과 (주)성화엔터프라이즈가 수입한 미국산 맥아음료(탄산음료)에서 표백제인 아황산염이 검출되어 수입음료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략)… 그동안 부산항을 통해서만도 한 해 수천톤씩 아황산염 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략)… 부산항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수입된 외국산 맥아음료는 19,360여 t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천여t이 유해성 우려가 있는 미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이들 수입 미국산 맥아음료 중에는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사과정에서 아황산염이 검출된 (주)금호무역이 수입한 킹스베리 제품도 지난해 분 843t, 올해 분 821t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략)…”라는 기사를,

③ 같은 달 10.자 제1면에 “수입음료 그냥 통과시켜”라는 표제 아래 “부산검역소, 시약 없다 발암물질 검사포기”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9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산 맥아음료에 아황산염과 에리소르빈산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7월부터 기존의 8개 항목에 이들 두 물질을 추가 검사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아황산염이 검출된 (본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보도) 미국산 킹스베리, 솔리츠를 비롯,

6개 제품에 대해 에리소르빈산나트륨 검사없이 적합 판정을 해주었다고 한다. …(중략)… 부산 경성대 김 교수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금속이나 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한 순도 시험을 통한 검사없이 음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④ 같은 달 11.자 제23면에 “미산음료 표백제 등 함유 알고도 방치, 부산검역소-수입업체 유착 의혹”이라는 표제 하에 “확인 후 2개월여 검사 않아”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 국립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서 표백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과 산화방지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지난 4월에 이미 확인하고서도 지난 6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 이들 항목의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입업체와의 밀착 의혹을 사고 있다. …(후략)…”라는 기사를,

⑤ 같은 달 14.자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신고, “국립검역소가 국민건강 외면, 표백제 든 수입 음료 파장”이라는 표제 아래, “「유해」 알고도 업체 반발 우려 「복지」 여전”이라는 부제를 달아 “…(전략)…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유해성분 아황산염이 함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중략)… 식품검사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유해성분 함유사실을 제품에 표기할 경우 대리점 공급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20~30% 하락하게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쉬워 사전에 이들 항목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다. …(후략)…”라는 기사를 각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 내용은 피고 신문사 소속 부산검역소 출입기자인 소외 김 가 작성한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각 기사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피고 신문사는 위 각 기사를 보도,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등 일반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며, 원고회사는 이를 은폐한 채 식품검사 당국과 유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수입, 시판하는 부도덕한 업체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신문사는 허위과장 보도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와 같은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파취재한 위 김 의 사용자로서, 원고회사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훼손된 명예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원고회사가 수입, 시판한 이 사건 제품에는 표백제

성분인 아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회사는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적발되었으며, 검역소와 유착 등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 등은 그 내용 자체로서는 일응 원고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러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다. 공익성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맥아음료에 표백제인 아황산염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입 통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바로 전체 국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정성과 식품검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내용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위 김 〇가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아 원고회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취재보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강제4호증의 4, 5, 8, 32, 33, 34, 3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 〇의 일부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진실성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강제2호증의 1 내지 4, 강제4호증의 3, 7 내지 36, 을제1호증의 3 내지 9, 13의 각 기재(다만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식품공전상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국립부산검역소로부터 성상, 가스압,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등에 관한 성분규격검사만을 받고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온 사실,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아황산염류는 소화관 점막 자극 등의 독성이 있으며 식품첨가물공전상 기타 식품(맥아음료 포함)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30ppm 이고, 정제되지 않은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는 중금속이나 비소 등이 검출될 수도 있는 사실,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 등의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7) 원료명 및 함량, (다) 참조], 이 사건 제품은 그 제조 공정과정

에서 표백제(안정제)로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첨가되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의 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서(갑제4호증의 10)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여 온 사실, 수입식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수입하는 식품 중 국내에서 원래의 포장대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이 사건 제품은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첨가물 등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식품위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의 4. 다.항 참조),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그동안 위와 같이 식품공전상의 성분규격검사만을 하고 수입업체가 첨가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두레산업은 미국산 맥아음료인 스트로(stroh) 94t를 수입하면서 국립부산검역소에 위 맥아음료에 에리소르빈산나트륨 20ppm과 메타중아황산칼륨 10ppm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를 한 바 있었는데도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 15.경 보건사회부 식품국으로부터 수입 맥아음료에 표시된 것 이외에 표백제 및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비로소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첨가물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소외 주식회사 성화엔터프라이즈가 같은 해 6. 18. 수입 신고한 미국산 맥아음료인 솔리츠(schlitz)에서 3.3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었고, 원고회사가 같은 해 7. 22.과 같은 달 23. 수입한 이 사건 제품 52,722kg에서 9.4ppm의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각 검출되었는데, 호주산 맥아음료인 이글(Eagle) 등 미국 외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한 맥아음료에는 메타중아황산칼륨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국립부산검역소는 다른 첨가물인 에리소르빈산나트륨에 대하여는 시약을 갖추지 못해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같은 해 7. 29. 국립보건원에 그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곳에서도 역시 시약을 구매중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어 검사가 지연되자 같은 해 8. 31. 검사 철회를 요청하여 종결처리된 사실, 한편 국립부산검역소는 같은 날 원고회사에 대하여 검출된 첨가물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의 명칭과 용도를 이 사건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누락된 제품 유형(탄산음료)의 표시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같은 해 9. 15. 이 사건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 한글로 위 사항을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의 수입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의 객관적 사실과 위 각 기사의 보도내용을 견주어 살피건대, ① 먼저 위 각 기사의 본문 중 국립부산검역소가 외국산 맥아음료에서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과 산화방지제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사실을 1994. 4.경 확인하고서도 같은 해 6.말 까지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 이후 국립부산검역

소의 첨가물 검사 결과 이 사건 제품 등 미국산 맥아음료에서 메타중아황산칼륨(아황산염류의 일종)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상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원고회사 등은 그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왔다는 내용, 국립부산검역소는 에리소르빈산나트륨도 검사 항목으로 정했으나 표준시약이 없어 그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 등에 적합 판정을 내려주었다는 내용, 아황산염을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장애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에리소르빈산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니나 중금속이나 비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도시험을 거쳐 음료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모두 진실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② 다음 위 각 기사의 표제나 부제만을 두고 얼핏 보면 원고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이 바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는 수입 맥아음료에서 표백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는데도 부산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관시켜 수입 맥아음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압축하여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그 본문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 정도의 과장된 표현은 표제의 성질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③ 1994. 9. 8.자 기사 본문 중 원고회사 등이 아황산염 함유 사실을 감춘 채 통관수속을 밟으려다 적발되었다는 부분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제품이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첨가되어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문제가 되어 국립부산검역소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④ 1994. 9. 11.자 기사 중 국립부산검역소와 수입업체 사이에 밀착 의혹을 사고 있다는 부분은, 그 기사의 전체 내용과 아울러 볼 때, 1994. 3. 24. 위 주식회사 두레산업이 미국산 맥아음료를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첨가된 에리소르빈산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였음에도 국립부산검역소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 보건사회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서야 수입 맥아음료에 대하여 첨가물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의혹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밀착 의혹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 할 수 없으며, ⑤ 1994. 9. 14.자 기사 본문 중 아황산염 등을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소문도 있다는 부분은, 비록 위 부분만을 두고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고회사를 특정하여 원고회사가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맥이나 그에 앞선 각 기사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연관시켜 볼 때 국립부산검역소의 안이한 검사 행정을 지적하는 데

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 ④와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부분만을 들어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국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원고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11.

재판장 판사 유 승 정
 판사 조 규 현
 판사 김 운 호

〈별지〉 정정보도문

가. 본보 1994. 9월 8, 9, 10, 11, 13, 14일자 수입 맥아음료 관련 기사 중, (주)금호무역에서 수입한 미국산 Kingsbury 제품은 미국 전역 및 캐나다, 사우디 등 세계 42개국에서 판매되는 맥아음료로서, 제품에 첨가된 메타중아황산칼륨(표백제)은 미국 식품검사국 기준을 통과하고, 국내 식품위생법상에도 기준치 이하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아황산염은 공업용 표백제로서 상기 제품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에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은 발암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나. 또한, (주)금호무역이 국립부산검역소와 결탁하여 불법 수입 판매한 것처럼 보도하여, (주)금호무역이 마치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인 것으로 독자들에게 잘못 인식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합니다. □

피고가 제작·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1996. 7. 25.자 판결 (95가합9071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5일 김 씨(망 김창룡의 딸)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취지가 광복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광복 후에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하여 암살되었다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으려는 데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고, 사후에 안두희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안두희의 진술 내용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과거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아가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한 묘사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묘사는 실제의 사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세부사실의 가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김창룡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1995년 8월 5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다. 방송내용 중 망 김창룡이 그 암살범인 안두희의 배후세력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고,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으며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금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 사 건** : 95가합90717 손해배상(기)
- 원 고** : 김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6. 6.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날 9시 뉴스 시간 중에 이 사건 판결문을 낭독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 사실의 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 을제6호증의 1, 3,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피고 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설치, 운영 및 관리하며 국내외 방송의 실시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2) 피고 공사는 1995. 8. 5. 부터 매주 토,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다.

(3)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취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광복 후에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하여 암살되었다는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으려는 데에 있었다.

(4) 이 사건 드라마 중 제1회(부제: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에서는 1949. 6. 26. 발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 그 방영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망 김창룡이 그 암살범인 안두희의 배후 세력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고, 제16회(부제: 김구가 살아있다면)에서 이 부분이 암살범 안두희의 회상 형식으로 다시 방영되었다.

① 망 김창룡이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서울지구 방첩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교통부장관인 망 허정, 국방부장관이던 망 신성모, 육군참모총장이던 채병덕, 육군 포병사령관이던 망 장은산, 육군 헌병부사령관이던 망 전병덕, 수도권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망 노덕술, 제헌의원원이던 망 김준연 등과 같이 군, 관의 실력자들이 정보교류를 위하여 만나는 모임인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② 망 김창룡이 1949. 초여름 경 암살범 안두희를 만나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고 했다

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게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고 말함으로써 위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③ 망 김창룡이 암살 사건 직후 서울 소공동에 있던 당시 육군 서울지구 방첩대(“대륙공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에 찾아가 그 곳에 수감되어 있던 암살범 안두희를 만나 “어! 안의사 수고했어. 가족들은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말어”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하고, 수사관들에게 “어이, 여기 안의사 특급으로 잘 모셔. 함부로 대하는 놈은 그날로 끝이야. 알았어!”라고 말하고, 그를 수사할 군 검찰관의 이름을 물어 보는 등으로 그의 뒤를 돌보아 주는 비호세력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회 방영분).

④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3. 경기 가평군에 있는 사슴목장에서 소외 권 등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라우. 미국 정보기관의 세뇌공작에 걸려들기로 했지만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동한 것은 김창룡이여. 김창룡 특무대장.”이라고 말하면서, 위 김창룡이 1949. 초여름 경 자신에게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게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고 말하는 장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방영하여 김창룡이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16회 방영분).

⑤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3. 위 사슴목장에서 소외 권 등의 사람들에게 “암살의 대가로 이박사는 장기집권을 했고 미국은 남쪽이라도 차지했지만 권불십년이라고, 4. 19. 나고 이박사는 미국으로 망명갔지. 신성모 국방장관은 그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지. 장은산 포병사령관은 이박사를 대통령 만든 사람은 자기라고 술김에 떠들어 대다 감옥에 가서 죽어서 나왔어. 김창룡이도 권력에 욕심을 내다 암살 당했지. 그 뒤로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하나 둘 죽었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16회 방영분).

⑥ 암살범 안두희가 1992. 9. 24. 서울 우당기념관에서 주요 일간지 기자 등이 모인 기자회견장에서 “암살 시나리오를 김지웅이 썼고 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김창룡이었습니다. 장은산 씨는 주로 암살대를 지휘했고, 내 느낌으로는 김창룡, 전봉덕, 김지웅 등이 계획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라고 증언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16회 방영분).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창룡은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군 내외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의정부에 주둔한 연대의 정보참모로서 그 직책상 거의 서울에 출입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김구 선생 암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 암살 당시에는 아직 창설되지도 않은 특무대장으로 88구락부에 참여했으며, 1949. 초여름경 위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직접적으로 암시, 선동하고, 나중에 안두희가 체포된 뒤 그의 뒤를 돌보아 주는 등으로 김구 선생의 암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고, 또 망 김창룡은 생전에 선글라스를 쓰거나 지휘봉을 들고 다닌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그가 항상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하게 묘사함으로써 망 김창룡의 명예 및 그의 딸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원으로 위자하고 명예 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을 피고의 9시 뉴스 방송에서 낭독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하고 여기에 드라마의 특성상 다소의 극적 내용을 가미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련되었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한 것은 공영 방송으로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사상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다.

3. 역사적 사실의 탐구,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1)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은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렸는 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 탐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는 이미 세월의 경과로 세인의 기억 속에서 잊혀

져 가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는 사건 현장의 검증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그 진실 여부를 상당한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 현재의 사실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 그 진위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드라마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극화한 창작물로서 그 제1부에서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 위 설시를 염두에 두고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방영한 행위가 망인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4.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안두희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다른 배후 인물 또는 세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암살 사건 직후부터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1960. 5. 24. 소외 고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여 1960. 8. 중순부터 같은 해 9. 중순 사이에 걸쳐서 발표된 소외, 사건 당시 헌병사령관이던 소외 장흥, 헌병부사령관이었던 전병덕, 한독당 조직부장이던 소외 김학규, 방첩대의 대위로서 위 안두희를 수사했던 소외 노엽, 포병부사령관이었던 소외 이기련, 위 안두희의 변호인이었던, 포병사령부에 근무했던 소외 신, 독립운동가인 소외 김승학 등의 증언을 통하여 망 김지용이 고위층과의 연락을 맡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망 신성모,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망 채병덕, 포병사령관이던 망 장은산과 같이 망 김창룡이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었었고, 암살 사건에 관련된 소외 홍종만은 1974. 이 사건은 위 김지용이 계획하고, 위 장은산이 지시하였으며, 위 신성모 등이 개입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안두희는 이러한 증언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여 왔다.

(2) 안두희의 진술

그 뒤 위 안두희는 1992. 4. 12. 위 권 1 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마련된 동아일보 기자와의 회견에서 망 김창룡이 평소 자신에게 김구를 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당시 김창룡의 세도와 위치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강조는 지시나 다름이 없었고, 암살 실행 후에 김창룡이 특무대 영창으로 면회를 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술, 담배, 고기 등을 차입해 주는 등 뒤를 돌보아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달 14. 저녁 엠비씨(MBC)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서 암살 사건에 망 김창룡 외에도 당시 수도권경찰청장이었던 망 1, 시경국장이었던 망 2, 수사과장이었던 망 3, 사찰과장이었던 망 4 도 역시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해 6. 26. 김구 선생의 추모일에는 암살은 위 장은산이 직접 지시하였고, 위 장은산 및 위 김창룡은 평소 자신에게 김구를 암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해 9. 23. 위 권 2 에 의해 경기 가평군 소재 사슴목장으로 납치된 상태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 방송된 것과 동일한 내용인 망 김창룡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김구 주위에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면 김구를 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김구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였고, 위 김창룡이 김구 암살 직후에 방첩대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에게 찾아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편의를 돌보아 줄 것을 말하였고, 이승만 전(前) 대통령이 김구 암살에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24. 서울 우당기념관에서 위 권 3 의 일행이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후 주요 일간지 등의 기자들만이 모인 회견장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반복하였으나, 같은 달 25.에는 같은 달 23. 가평군에서의 증언 및 같은 달 24. 우당기념관에서의 증언이 모두 위 권 4 의 고문에 의한 허위의 내용이었다고 앞서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3) 위와 같은 안두희의 증언 내용이 그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되는 등 새롭게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의 진상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자,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두희가 제출한 육성 녹음테이프 120개 및 그 때까지의 다른 기록이나 자료 등을 토대로 그 진상 규명에 나섰는 바, 1995. 12. 15.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망 김창룡이 김구 암살 이전에 암살 모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암살 이후에 방첩대장으로서(위 보고서에는 특무대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수감되어 있는 안두희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수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암살 사건

의 사후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위 신성모의 주동하에 채병덕, 장은산, 김지웅이 모인 모임인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망 김창룡은 위 암살 당시 직책이 육군 총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제1연대 정보참모였다가 김구 암살 사건이 발생한 후 1949. 7. 14.부터 육군 정보국 방첩대장으로 부임하였으나, 1956. 동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문보도(을제1호중)의 기재와 같이 위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11일 전인 1949. 6. 15.에 벌써 방첩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5) 피고는 당시 조사, 확인 가능한 위와 같은 자료(특히 안두희의 위 증언)를 토대로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나, 과연 위 사건이 그 범행을 실행한 안두희의 단독범행이었는지, 그 배후에 조정 또는 비호하는 인물이나 세력이 있었는지, 나아가 망 김창룡이 이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위 안두희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는 없다.

5.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 범행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사망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안두희의 진술과 과거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조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달리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위 안두희는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기는 했으나 1992. 4. 14. 엠비씨(MBC)텔레비전 방송에서 사회자인 소외 박경재에게, 1992. 9. 24. 우당기념관에서 주요 일간지 등의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 김창룡이 김구 암살 사건에 사전부터 관련되어 있다고 각 진술하였고, 1960.부터 당시 직책상 이 사건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위 장흥, 전병덕 등에 의하여 망 김창룡이 계속하여 위 암살 사건의 배후인물로서 지목되어 왔으며, 국회의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위 김창룡이 이른바 88구락부의 구성원이었고 김구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물론 안두희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위 김창룡이 88구락부의 구성원으로서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사전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 선동하고, 사후에 안두희가 수감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내용은 위와 같은 안두희의 진술 내용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과거의 발언 내용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그 제작 의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더욱 위와 같이 망 김창룡이 위 사건의 배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안두희의 증언이 도하 모든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문제 삼는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6. 부정적인 묘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망 김창룡이 김구 선생의 암살에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한 묘사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하급자에게 거들먹거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망인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망 김창룡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묘사는 실제의 사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세부사실의 가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김창룡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5.

□

재판장 판사 심 재 돈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헌 종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1996. 8. 20.자 판결 (94다29928)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996년 8월 20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가정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칼로 찌른 뒤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권○ ○ 군과 그 가족들이 피의사실 등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성판단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군과 가족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인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원고들에 대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을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측은 불복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측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다2992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권

2. 권

3. 이

원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권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 주수창, 김동우

피고, 피상고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우만

소송수행자 홍성계, 성낙춘, 하명수, 옥영정, 조태구

피고, 상고인 : 2. 김

서울 송파구

3. 정

4. 진

피고 3, 4의 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의 11 서울 지방경찰청내

피고 2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5. 17. 선고, 93나3263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김 , 정 , 진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 기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김 를 수사책임자” 라고 판시한 것은 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권 의 변사사건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으로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에 있어서의 책임자라는 의미일 뿐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의미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책임자라도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김 를 수사책임자” 라고 판시한 것을 가리켜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변사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마포경찰서장인 피고 김 , 위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고 정 과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 주임인 피고 진 이 원고 권 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 권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비록 피의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된 후 직접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한 사람은 피고 정 혼자였지만 보도자료의 배포 자체는 피고 김 , 정 , 진 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각 불법행위자의 구

체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김 . 진 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 . 정 . 진 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속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1. 10. 5. 원고 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세)으로부터 자기가 위 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9세)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였다라는 내용의 자백을 받자, 위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를 위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입건한 후 다음날인 10. 6. 마포경찰서에서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 자백과 같은 내용의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고 정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하여 위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관하여 위 사건은 폭력 비디오에 빠져 있는 위 원고가 폭력 비디오를 모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그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의 상당성 여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당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논지와 같다 할 것이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수사결과를 발표한 1991. 10. 5.의 시점에서 피고 김 등이 원고 권 을 범인으로 오신한 데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는 그 당시 밝혀진 사실 외에도 그 후의 수사진전에 따라 드러난 객관적 사실, 수사 및

발표의 경위와 과정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1991. 11. 17.자 노 의 경찰에서의 진술, 같은 해 12. 26. 자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증거자료로 사용(위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들에게 유리한 자료이다)된 것이어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조사된 증거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각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권 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른 위 원고 자신의 잘못도 참작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위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 손해를 입은 점,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자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김 , 정 , 진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0.

□

재판장 대법관 김 석 수
대법관 정 귀 호
주 심 대법관 이 돈 회

2심 : 서울고등법원 1994. 5. 17.자 판결 (93나32639)

1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자 판결 (92가합23099)

2심 및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p.154~176 참조

취재원이 수차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고,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월간지로서 일간신문과는 달리
취재시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22.자 판결 (94가합9859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22일 미국 국적의 기자인 문 씨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월간조선에 『문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 보도에 대하여』 제하로 월간조선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배상한다는 취지의 판결내용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문 씨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월간조선 1994년 9월호 『김일성 장례식은 현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제하로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미교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

서 『문 의 충성서약』이라는 소제목으로 「문 씨가 위로연에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자 원고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를 취재원으로 그의 체험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기사 중 원고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취재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딸」 지와의 대담기사, 북한 TV의 방송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관련 부분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북한 TV방송 내용 중 원고가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언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장례식에 김일성의 처 김성애와 아들 김 이 참석하였는데도 양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피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기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수 차례에 걸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김일성 동상의 사진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월간지로서 일간신문과는 달리 취재시간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98592 손해배상(기)

원 고 : 문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VA, 22207 U.S.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송두환, 김기중, 안상운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최광률, 최승인

변론종결 : 1996. 7. 11.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1996. 8.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 제119면에 제목은 고딕체 3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의 보도내용을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월간조선' 119쪽에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3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나. 원고는 소외 경향신문사에서 1966. 11. 14.부터 1971. 10. 7.까지 편집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현재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도 일간 신문이나 월간지에 상당수의 기사를 기고한 바 있고, 피고는 신문, 잡지 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지인 '조선일보' 및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이 취재하여 작성한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월간조선' 1994.9호 제 119면부터 125면까지 사이에 게재하였는 바, 그 기사의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편집자주』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기사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한 재일교포와의 국제전화를 통한 인터뷰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며 취재원인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그 신분이나 기타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숨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으며,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1)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희대의 코미디였다. 이런 비극적인 코미디를 나는 평생에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대성통곡하며 집단 공황증세를 보이다가도 '울지 말라'는 당의 지시가 있자 추도식에서는 울음을 푼 그친 북한 동포들, 허름한 신발에 양말도 신지 못한 채 주석단에 올라가 농민대표로 추도사를 읽은 여성, 추도식이 끝난 뒤 위로연에서 "이제는 기러기떼가 제일 앞서 가는 기러기를 따라가듯 김정일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 다양한 군상들이 펼치는 광경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이자 희대의 비극이었다. 김일성이 2천만 주민을 이런 바보들로 만든 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이 사건 시작부분임, 119면 1단 ~ 120면 1단).

(2) 文 의 충성서약(122면 1단 소제목 고덕채 활자)

교포들은 김일성의 시신 앞에서 큰절을 하고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文 의 발언이 그 극치를 이뤘다. 文씨는 마이크를 잡더니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광경은 북한에서 내가 본 또 하나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그래서 이번 북한 체류는 길고 지루했다(122면 3단).

라. 이 사건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의 북한측의 고위층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실명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원고 한 사람 뿐이다.

마. 위 기사가 실린 '월간조선' 1994. 9.호는 국내에서는 1994. 8. 20.부터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바. '월간조선'은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매월 약 650부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그 시작 부분에 김일성의 장례식과 추도식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는 취재원의 소감을 요약하면서 그 뒤에 추도식 당시의 북한 군중들의 태도와 농민대표로 조사를 읽은 여성의 모습, 기러기떼 운운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교포들이라는 내용을 열거하여 그러한 모습 때문에 취재원이 그와 같은 소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문 의 충성서약』이라는 소제목 하에 원고의 발언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 열린 위로연에서 행해진 해외교포들의 아부성 발언 중의 극치였다는 설명과 같이 원고가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 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싣고 있으며, 이 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의 북한측의 고위층 인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원고 한 사람만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일반의 독자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시작 부분과 원고의 발언 부분을 연결지어 원고가 김일성 추도식이 끝난 뒤의 위로연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가장 심한 아부성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의 그러한 발언과 다른 정황들로 인하여 위 취재원은 김일성의 장례식이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소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피고 발행의 ‘월간조선’ 1994. 9.호가 국내 및 미국 내의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국내의 일간지 및 월간지에 상당수의 기사를 기고하는 등으로 국내에서도 기자로서 활동해 온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기사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이 기사 전체의 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재미교포의 체험기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의 저의,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소속의 기자인 소외 김 ○○ 및 편집부장인 소외 조 ○○ 가 위 재미교포를 만나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위 재미교포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때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 2매를 제공한 점 및 위 취재원의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월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대담기사에서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북한 TV에도 방송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관련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사실이거나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월간지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취재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사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또한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월간지와 같은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기사의 원고관련 부분이 진실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취재원의 존재 및 정보 제공

원고가 1994. 7. 8. 도쿄에서 북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같은 달 13. 북경을 통하여 평양에 도착하여 같은 달 19.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장례식과 같은 달 20. 평양에서 열린 추도식에 각 참석하였으며, 위 추도식 후에 평양목란관에서 열린 해외동포

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6호증의 3(갑제2호증의 6과 같다), 4(갑제2호증의 7과 같다), 5 내지 7, 을8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기자인 소외 김 이 1994. 7. 경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성명 미상의 재미교포(이하 취재원이라고만 한다)와 국제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기사 내용을 취재한 뒤 같은 해 8. 초순경 국내를 방문한 위 취재원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그로부터 김일성 동상 사진 2장 (을8호증의 1, 2)을 받은 사실 및 그 후 같은 달 초순경 위 김 은 피고 소속 월간조선부 편집부장인 소외 조 와 같이 위 취재원을 만나 이 사건기사의 내용 및 그외 북한의 정세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위 김 은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기사가 위 취재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위 김 의 취재수첩(을제2호증의 6, 7)에는 원고가 '7천만 인민' 이 아니라 '7천만 동포'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취재원으로부터 사후에 제출받았다는 일기장(을제11호증)에는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카터 미국 전(前) 대통령이 운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올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올었고, 원고가 김일성 사망 소식과 관련하여 카터 전 대통령과 통화하였으며, 기러기떼처럼 김정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주된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위 김 및 위 조 는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이 사건 기사로 작성함에 있어 위 취재원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출입하는 까닭에 그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취재원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기사 첫머리 부분의 편집자 주에서 그를 재미교포 아닌 재일교포로, 국내에서 직접 만나 취재하였음에도 국제전화를 통하여 취재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기사는 피고가 방북하여 김일성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한 위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

나아가 위 취재원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의 2, 3, 을 10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그 잡지 기자인 소외 신 과의 대담 기사 중에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올었고, 김일성 추도식 행사 후에 3일 동안 앓아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말' 지에 수 차례에 걸쳐서 기고한 북한 관련 기사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람됨됨이나 그들에 대한 북한 주민의 태도, 북한의 경제사

정 등에 관하여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김일성 추도식행사 이후에 열린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 석상에서 이 사건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으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위 '말' 지 1994. 9.호에 게재된 원고의 발언은 "저는 7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취재 준비를 위해 7월 8일 도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런 뜻밖의 사태(김일성 사망 소식을 뜻한다)에 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둬 조국이 통일로 다가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비보를 접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문맥상 원고가 단순히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추도의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남북통일의 밑받침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 사건기사 내용 중의 원고가 발언했다는 내용은 그 전체적인 문맥상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아부 내지는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말' 지에 실린 원고의 발언이 일부 이 사건기사 중의 원고가 발언했다는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이 사건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발언을 위 위로연에서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제8호증의 1, 2의 각 사진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때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취재원이 방북하여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취재원이 제공한 다른 부분의 내용도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위로연 장면을 방영한 북한 TV의 화면상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거나 발언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을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6, 7, 갑 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일성의 장례식 및 추도식에 그의 처인 김 및 자인 김 이 참석하였고 다만 북한 TV 방영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인데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피고 발행의 '조선일보'를 포함한 국내 도하 각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다) 위 취재원은 위 양인이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 취재원이 피고에게 제공한 정보 중 상당 부분에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재원이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을 방북하여 그 장례식 및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공한 정보 중 원고 관련 부분의 정확성, 진실성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그외 을제2호증의 2, 을제6호증의 3 내지 7, 을제7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조 의 각 증언,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위로연에서 이 사건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상당한 이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기사의 내용의 진실이 아니더라도 당시 피고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김 이 1994. 7.경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취재원과 국제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기사 내용을 취재한 뒤 같은 해 8. 초순경 국내를 방문한 위 취재원을 2차례에 걸쳐서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그로부터 김일성 동상 사진 2장을 받은 사실 및 그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소속 편집부장인 소외 조 역시 위 취재원을 만나 그 진술 내용을 취재한 사실 및 이 사건기사가 위 취재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위 위로연에 참석한 사실, 원고가 월간 '말' 1994. 9. 호에 게재된 그 잡지 기자인 소외 신 과의 대담 기사 중에도료에서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듣고 울었고, 김일성 추도식 행사 후에 3일 동안 앓아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부분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6, 7,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기사에는 김일성의 장례식 및 추도식에 그의 처인 김 및 자인 김 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양인이 참석하였고, 다만 북한 TV 방영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인 사실 및 위 양인의 참석 여부와 TV에 그 참석 모습이 방영되었는지의 여부는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권력구도와 관련하여 언론 및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의 일간신문에도 그 참석 사실 등이 보도된 사실 [피고 발행의 '조선일보' 1994. 7. 20.자(갑제3호증의 1) 및 같은 달 28.자 (갑제3호증의 3)에도 위 양인의 참석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김 및 조 는 이 사건기사를 취재함에 있어 김일성 사망 후의 북한 전망 및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기사 내용 중 북한의 주요 지도층 인사로서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권력 구도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 및 김 의 김일성 장례식 및 추도식에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다른 부분의 진실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원고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국내의 월간지 등에 기사를 기고하여 왔으

므로 위 김 및 조 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원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단지 위 취재원이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 학력,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동상 사진 2매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 것 이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은 월간지로서 일간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취재시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위 김 이 취재원과 국제전화상으로 최초로 연락을 한 것은 1994. 7.경이고 조 와 같이 국내에서 취재원을 직접 만난 것도 1994. 8. 초순경으로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발매된 1994. 8. 20.까지는 상당한 시간 적 여유가 있다)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월간 '말'지의 기사 및 북한 TV의 방영 내용에 관하여 살펴건대, 원고가 '말'지 1994. 9.호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도쿄에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울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다만 위 대담기사의 문맥상 원고가 온 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김일성에 대한 추도의 마음에서라기 보다는 남북통일의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마음에서라 고 해석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및 원고가 위로연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TV에 방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제된 기사 내용을 취재하 여 기사를 작성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는 위 '말'지 1994. 9.호보다 먼저 발매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 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의 위로연 참석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북한 TV 방영 내용을 위 양인이 이 사건기사 작성 당시에 참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말'지의 기 사나 북한 TV의 방영 내용을 들어 위 김 이나 조 가 이 사건기사를 작성하는 당시 에 원고 관련 부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 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그 내용 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표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명예회복의 방법

한편 위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와 함께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활자의 크기와 종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보도내용을 '월간조선'에 이 사건 기사에 준하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 1994. 9.호가 발매된 1994. 8.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조선' 제119면에 제목은 고딕체 3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5호 활자로 하여 별지 제1. 기재의 보도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2.

재판장 판사 심 재 돈
 판사 박 종 욱
 판사 유 현 종

〈별지 1〉

제 목 : 문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 보도에 관하여

내 용 : 본사는 1994년 9월호 '월간조선'의 119쪽부터 125쪽까지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위 기사의 본문 내용 중 문 씨가 1994년 7월 20일 평양시 소재 목란관에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문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제 목 : 文 씨의 이른바 방북발언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사는 1994년 9월호 '월간조선'의 119쪽부터 125쪽까지 『김일성 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본문 내용 중 文 씨가 1994년 7월 20일 평양시 소재 목란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본사가 보도한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주자 카터 대통령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 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또한 본사는 위 '월간조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억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6. 9. 6.자 판결 (95가합1419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6일 문화일보 편집담당 전무였던 최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피고의 사건 사실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신문은 1995년 7월 24일자에 『문화일보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으로 문화노조 소식지를 인용하여 「(문화일보)노조는 문화일보사 회장과 편집담당 전무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했다. '회장의 지시 한마디로 정체불명 필자들의 글이 실리거나 연재되었다. 편집담당 전무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비싼 미술품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교육부 출입기자가 힘을 쓰게 했다고 한다. 전무는 또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가 이런 사실을 공개질의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마땅히 해명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실었다.

이에 원고는 사실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14198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변론종결 : 1996. 8. 1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문 송달 후 편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판결문 전문을 본문활자로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신문기사), 을제1호증의 1, 2(각 언론노보), 을제2호증(문화노보), 을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증), 을제6호증의 1, 2(전국언론인명론 표지 및 내용), 을제7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기사),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공개질의서)의 각 기재, 증인 송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문화일보사(이하 문화일보사라고만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

무하면서 편집국장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1995. 7. 14.경 문화일보사 내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그 조합설립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위 문화일보는 같은 달 15.경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결성에 관여한 일부 기자들에 대하여 기자직을 박탈하거나 무연고 지역의 주재기자로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은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이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쫓겨나고 지역을 열어 이에 항의하고 위 인사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던 중 같은 달 20일경 발행한 문화노조 비상소식지 3호에서 “경영진에게 묻는다. 부정,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라는 제목 하에 “최 편집담당전무에게 묻습니다. ① 최전무는 미술담당 등 문화부 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 등을 선물로 받아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② 최전무는 케이(K)대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하기 위해 교육부 출입 기자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 관철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③ 지방주재 기자들에 따르면 최전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방의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3) 피고는 1995. 7. 24.자 발행의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 사설란 부분에 “문화일보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 하에 “(문화일보)노조는 문화일보사 회장과 편집담당 전무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했다. ‘회장의 지시 한마디로 정체불명 필자들의 글이 실리거나 연재되었다. 편집담당 전무는 문화부 기자들에게 비싼 미술품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교육부 출입기자가 힘을 쓰게 했다고 한다. 전무는 또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급 개발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가 이런 사실을 공개 질의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마땅히 해명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지칭하는 위 사실내용은 사실무근의 기사로서 피고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를 전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가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

라도 피고가 여러 가지 자료 및 정황에 기하여 위 사실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실에서 표시한 '문화일보사의 편집담당전무'는 비록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문화일보사 내에서의 직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사실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실은 위 문화일보사의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공개질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공개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일반의 독자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위 노동조합이 공개질의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권한을 남용하여 기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부도덕한 언론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이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법성의 유무

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의 1 내지

3(각 성명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 문화일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노동조합원인 기자들에 대하여 한 인사조치는 당시 언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위 문화일보사의 노동조합은 위 인사조치에 항의하면서 아울러 그 인사발령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경영진의 일원인 원고에게 직무에 관련된 부정 및 비리의혹에 관하여 답변을 촉구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실 모두에서 위와 같은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기술을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개질의 내용을 전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위 문화일보사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아울러 언론기관인 위 문화일보사의 운영 및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기된 의문을 문화일보사 노동조합의 공개질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다루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각 진술조서), 을제9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송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확인서)외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년경 위 문화일보의 편집국장을 담당하면서 당시 미술담당기자로 근무하는 소외 전 ○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소외 장순엽, 김영덕 등의 그림을 좋아하니 그와 같은 미술품을 싸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1993. 3. 말경에는 문화일보 갤러리에 전시 중이던 약 금 6,000,000원 정도의 그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여 위 전 ○이 그 그림의 화가에게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원고는 1992. 3.경 당시 교육부출입기자로 근무하는 소외 황 ○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들 소외 최 ○이 광운대학을 다니는데 위 대학의 기획실장인 소외 최 ○을 잘 아느냐고 물으면서 위 최 ○이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밖에 원고는 1995년경 지방주재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의 고급개발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이 상당기간 동안 위 문화일보사의 기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고, 위 문화일보의 인사조치로 인하여 경영진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위 문화일보의 노동조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진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 공개질의

와 함께 위 전 이 원고로부터 유명화가의 그림을 싸게 사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위 전 작성의 확인서(을제5호증)도 공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9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5호증의 1(진술조서), 2(장학금수혜증명서), 3 내지 6(각 기안용지), 7(교내아르바이트신청서), 8(자동차운전면허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인용한 위 문화일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공개질의 내용은 과장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기초적 사실에 있어서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내용이 위 문화일보사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기간 거론되던 중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개질의되고, 이에 관한 일부 관련자료도 공개, 제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실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6.

□

재판장 판사 홍 성 무

판사 이 상 윤

판사 최 주 영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전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했으며,
피고 신문사는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996. 9. 18.자 판결 (95나419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9. 15.자 판결 (95가합350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18일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 씨가 주식회사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 부산일보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일보가 1992년 5월 7일자 사회면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 혐의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원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부산일보는 변론을 통해 문제가 된 이 사건기사는 권위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인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아 기사화한 것이고, 송고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사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고 또한 원고는 이미 연합통신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

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크레디터를 붙이거나, 전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원고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회하는 등, 이 사건 기사의 진위에 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피고가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합통신의 기사에 의존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물리쳤고 또 피고의 정정보도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책임은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1995년 9월 15일 판결을 통해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관이고,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고, 또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95가합35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를 송고한 연합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년 4월 6일 일부 승소판결(92가합48463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 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1992년 6월 2일자 서울신문 『민자대표 기사날조 손충무 피고인 석방』제하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석방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 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93나22236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 언론중재 1994년 겨울호 참조)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5나419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항소인 : 부산일보(釜山日報)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2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재택, 최규봉, 송임호, 황연택, 김용균

변론종결 : 1996. 8. 21.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9. 15. 선고, 95가합350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1996. 9.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이외의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강제2호증의 1, 2, 강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2. 5. 7. 그가 발행하는 '인사이드월드' 라는 잡지에 미국 교포신문인 LA

데일리타임즈 발행인 소외 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기초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 위원에게 숨겨 놓은 딸이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2) 피고는 1992. 5. 7. 같은 날짜 피고 발행의 일간신문인 부산일보 사회면 4단 크기로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 혐의,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구속』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위 구속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기사 말미에 “손씨는 지난 '88년 신동아 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최회장에게 시가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이하 이 사건기사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LA데일리 타임즈 발행인인 소외 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문제가 된 이 사건기사는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연합통신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송고받아 피고가 기사화한 것인데, 연합통신은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들과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각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해 주는 권위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이며, 각 신문사가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나,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도 그 전제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을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기사는 김영삼 대표라는 공인(公人)의 사생활

에 관한 기사의 일부이고, 원고 또한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고, 그 당시 「인사이드월드」라는 잡지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에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을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연합통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연합통신은 우리나라의 전국에 걸쳐 중앙지 20개사, 지방지 37개사의 각 신문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 피고 또한 지방신문사로서 연합통신과 통신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피고의 연합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을 전재할 때에는 크레디트를 붙여서 그 전재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크레디트를 붙이지 아니한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에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크레디트를 붙이거나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원고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회하는 등 이 사건기사의 진위에 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그 기사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연합통신이 전국에 걸쳐 각 신문사들과 통신 송수신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가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 연합통신의 기사에 의존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1992. 5. 19. 부산일보 지상에 “연합통신이 이 사건 문제가 된 기사가 착오였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고, 원고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주장 일자의 부산일보에 “한편 연합통신은 19일 지난 7일 오전 송고, 같은 날 본보 23면에 게재된 이 사건기사의 ‘손씨’는 LA데일리타임즈 발행인 씨의 착오였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연합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연합통신으로부터 이미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정정보도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되어 정신상의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책임은 연합뉴스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연합뉴스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내용 중 이 사건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와 과정, 후에 정정기사가 보도된 점과 그 정정기사의 크기와 비중,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연합뉴스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및 피고가 전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92.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6. 9.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8.

재판장 판사 송 기 홍
 판사 최 상 열
 판사 홍 일 표

1심 判決文

사 건 : 95가합3509 손해배상(기)

원 고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 고 : 부산일보(釜山日報)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재택, 최규봉, 송입호, 황연택, 김용균

변론종결 : 1995. 8. 2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 5. 7.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으로부터 기사를 송고받아 같은 날짜 피고 발행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에 “김영삼 대표 명예훼손혐의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구속”이란 제하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기사의 말미부분에 손씨는 지난 88년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후 최 회장에게 시가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 원고가 위 통신사를 상대로 위 기사송고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통신사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확인취재를 하여 보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내의 전 일간지는 위 통신사와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위 통신이 송고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일반

적인 관행으로서 위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관이고,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고, 또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송부받은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송수신 및 전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송고받는 통신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주식회사 연합통신으로부터 송고받아 보도한 내용은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한 추측성 기사가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도 송부받은 당일자 신문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전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5.

□

재판장 판사 이 흥 기
판사 이 건 배
판사 김 학 중

제보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1996. 10. 15.자 판결 (95가합9634)

事實概要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96년 10월 15일 김해군 주촌면 최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 「피고는 당사자인 원고에게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보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제신문이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3월 15일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고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사육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기사가 허위보도이고 이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1995년 3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문제된 신축 사슴축사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5부산중재6)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신청인은 진실에 반하는 사건보도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여 재판부는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1996년 10월 15일 판결 95카합5821)

判決文

사 건 : 95가합9634 정정보도

신청인 : 최

경남 김해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김능철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연제구 거제동 76의 2

대표이사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문일

변론종결 : 1996. 9. 1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30.부터 1996. 10.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29.까지 경남 김해군 주촌면 부면장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이고, 피고는 일간지인 국제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위 국제신문 1995. 3. 15.자 제28면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라는 표제 아래, 신청인을 최모 씨라고 표현하여 「김해군의 공무원이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고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등 불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김해군과 주촌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주촌면 간부직원인 최모 씨(51)가

산 자신의 감나무 밭에 있는 60평짜리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감나무밭 산 기슭에 사슴을 사육하기 위해 50~60평의 축사를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김해군 등 관계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후략〕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김해군 출입기자인 소외 가 작성한 것이다.

다. 한편 위 기사에는 신청인이 단순히 최모 씨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고와 생활을 같이 하는 주변사람들은 김해군의 공무원으로 주촌면 산 에 감나무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기사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의 기사이고, 피고 신문사가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수많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인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기사는 원고가 자신의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였다는 부분과 자신의 토지에 법규에 따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별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차례로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기사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

(1) 창고의 공장으로의 불법임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경남 김해군 주촌면 산 지상의 창고를 소외 우진공업사에 공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위 창고를 단순히 완제품의 제품보관창고로 임대해 준 것이고 공장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3내지6호층, 강제9호층의 7내지 9, 같은 호층의 13내지 19, 같은 호층의 20 내지 25, 강제10, 16, 18 호층의 각 기재 및 증인 구, 김, 장, 이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내삼리 산 임야 2328평방미터(위 임야는 1992. 9. 23. 같은 리 산 로 지번이 바뀌었다)에 축사 196.62평방미터(당초 위 임야에는 각 196.62평방미터의 축사 2동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 축사 1동은 이 사건 창고로 되고 다른 축사 1동은 1991. 6. 24. 섬유합사공장으로 용도변경되어 1992. 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대창섬유에 임대되어 있다)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 9. 27. 위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1994. 10. 4.부터 1995. 3.경까지 위 창고를 소외 우진공업사에게 완제품의 보관창고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창고가 공장으로 임대되어 있다는 이 사건기사는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고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고 지상에 축사를 지어 이를 사슴 사육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축사에 대하여 1994. 8. 6. 건축신고를 했으나 기사가 나갈 당시 축사가 완공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 뿐이고, 가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6호증(강제9호증의 10과 같다), 강제9호증의13, 강제10, 11호증, 강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6. 주촌면에 위 지상에 축사 및 퇴비사 각 36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경신고없이 위 축사 및 퇴비사를 각 40평방미터로 증축하고 이외에 관리사 47평방미터와 화장실 4평방미터를 추가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합계 131평방미터를 신축한 사실, 원고는 위 증축 부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95. 4.경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 131평방미터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축사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증축부분 5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관리사 등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당초의 축사부분 7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기사 역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내용 중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기자인 소외 김 가 내삼리 일대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마을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당시 원고의 직속상관인 주촌면장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 김, 김,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 가 1995. 2. 23.경 동료 기자들인 소외 김, 김 등을 통하여 이장인 소외 장 로부터 이 사건기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위 장 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주촌면장인 김 을 만난 사실은 인

정이 되나, 한편 위 김 는 위 김 으로부터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 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가 공장으로 임대되고 있는지 여부와 신축된 축사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당사자인 원고에게 위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 장필규의 제보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외 김 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소외 장 의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김 가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제14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1995. 2. 27.경부터 장기간에 걸친 김해군의 감사를 받고 결국 1995. 4. 29. 부면장에 대한 직위가 해제됨과 동시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인격 및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와 지위,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신분적 불이익, 이 사건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10.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5.

□

재판장 판사 이 기 중
판사 박 인 식
판사 장 희 권